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073-01

식품자조금 운영관리 방안 연구



한국농업경제학회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식품자조금 운영관리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2021년 10월 ~ 2022년 1월**

연구책임자: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연구참여자: 노순웅 ㈜위드잇 대표

권재현 ㈜위드잇 연구원

김가을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구조교

조수민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구조교

2022년 1월

한국농업경제학회장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의 내용	3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5

제2장 자조금의 개념 및 현황

1. 자조금의 개념 및 필요성	6
2. 농축산 및 식품자조금의 현황 및 시사점	8

제3장 식품자조금의 실태 분석

1. 식품자조금의 운영 실태	48
2. 관련 이슈 및 개선 과제	62

제4장 식품자조금의 운영·관리 방안

1. 기본 방향	70
2. 부문별 세부 개선 방안	71

부록 1. 닭고기자조금의 내부갈등 사례	140
부록 2. 식품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143
부록 3.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보고	162
부록 4. 비영리 사단법인 표준정관(예문)	168
부록 5. 00식품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180
부록 6. 한국장류협동조합 2021년도 중점운영방향	186

참고 문헌	194
-------------	-----

표 차 례

제2장

표 2-1 농산자조금 품목의 생산액	10
표 2-2 농산자조금 품목의 수출실적	11
표 2-3 축산자조금 품목의 생산액	13
표 2-4 축산자조금 품목의 수출실적	14
표 2-5 농산자조금 단체 등록현황	15
표 2-6 농수산자조금법	16
표 2-7 자조금 단체 운영실적 평가등급 및 매칭비율	17
표 2-8 농수산자조금 정부예산	17
표 2-9 농산의무자조금 예산규모(2021년 기준)	18
표 2-10 농산의무자조금 거출기준	19
표 2-11 농산의무자조금 국고 보조율 및 사업비 용도	21
표 2-12 농산의무자조금 사업추진현황(2021년)	22
표 2-13 농산자조금의 운영조직 구조	23
표 2-14 축산자조금 단체 등록현황	28
표 2-15 축산자조금법	29
표 2-16 축산자조금 예산규모(2021년 기준)	30
표 2-17 축산자조금 정부예산	31
표 2-18 축산자조금 거출기준	31
표 2-19 축산의무자조금 사업추진현황	33
표 2-20 최근 5년간 김치 공급 추이	39
표 2-21 김치 수출 추이	39
표 2-22 김치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내역 (2020년)	40

표 2-23	전통주 생산실적	41
표 2-24	전통주 수출 추이	41
표 2-25	전통주 수출협회의의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현황 (2020년)	42
표 2-26	막걸리 수출협회의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현황 (2020년)	42
표 2-27	김치산업진흥법과 전통주자조금법 비교	44
표 2-28	전통주 등 자조금 관련 조문 개정사항	47

제3장

표 3-1	식품자조금 조성규모 및 거출기준 (2021년)	49
표 3-2	김치자조금 회원 현황	50
표 3-3	연도별 김치자조금 사업실적	52
표 3-4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실적	53
표 3-5	김치재료 계약재배사업 지원현황 (2020년)	54
표 3-6	위생안전/품질검사 사업실적	55
표 3-7	소비촉진 홍보 사업실적	56
표 3-8	2021년 국산김치자율표시 사업추진 계획	58
표 3-9	해외시장개척 사업실적	59
표 3-10	우수종균 보급지원 사업실적	59
표 3-11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실적	60
표 3-12	연구용역 사업실적	61
표 3-13	자조금평가 사업계획	62
표 3-14	농축산자조금과 김치자조금의 상위법 비교	63

제4장

표 4-1	축산자조금법 제정 및 개정 현황	74
표 4-2	농수산물자조금법 제정 및 개정 현황	77
표 4-3	입법 단계별 절차 및 소요기간	79
표 4-4	축산자조금법·농수산물자조금법 및 식품자조금법 제정안 비교	81

표 4-5 농축산자조금 및 네덜란드 자조금의 거출 한도 비교	88
표 4-6 자조금 거출기준에 따른 장단점	89
표 4-7 2017년 배추김치 및 기타김치 매출현황	89
표 4-8 김치 제조업체 대상 판매액 기준 거출금 및 자조금 조성규모(추정) ...	90
표 4-9 김치 제조업체 대상 판매량 기준 거출금 및 자조금 조성규모(추정) ...	90
표 4-10 배추김치 판매량 상위 36개 상품 분석 결과(쿠팡 기준)	91
표 4-11 회원사 대상 판매액 기준 구간설정을 통한 자조금 조성 규모(추정) ·	92
표 4-12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수익현황(2020년 기준)	93
표 4-13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익목적사업	93
표 4-14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익목적사업의 실적	94
표 4-15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안)	95
표 4-16 자조금사업 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	97
표 4-17 식품자조금 단체 운용비용의 범위	99
표 4-18 식품자조금 단체 운영평가 평가지표(안)	101
표 4-19 김치류 국내 판매액 상위 20개소 현황	105
표 4-20 김치류 제조업체 종업원수 규모별 매출액 현황	106
표 4-21 김치류 제조업체 종업원수 규모별 업체수 및 출하액 현황	107
표 4-22 자조금사업 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현황	113
표 4-23 축산자조금 운영관리비 및 인건비 현황	115
표 4-24 축산자조금 단체 직급별 연봉현황	116
표 4-25 연차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전담인력 확대 방안	117
표 4-26 정부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추진절차(안)	118
표 4-27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사항	120
표 4-28 농림사업 중 자조금 납부 우대사항 사례	121
표 4-29 한국장류협동조합 중점운영방향(요약)(사례)	123
표 4-30 자조금 단체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모사업 참여 사례	124
표 4-31 식품관련 유관단체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 사례	125
표 4-32 김치관련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현황	126

표 4-33 우유와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공동 레시피 개발 사례	127
표 4-34 한우자조금 연구과제 공모 내용: 2022년	135

부록3

부록 표-1 식약처 생산실적 양식	167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4
-----------------------	---

제2장

그림 2-1 농협과 자조금의 차이	7
그림 2-2 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추진체계	24
그림 2-3 농산자조금 운영구조 예시(친환경, 인삼)	26
그림 2-4 자조금-수출통합조직이 연계한 수출사업 연계안	27
그림 2-5 한돈 수납방법의 예시	32
그림 2-6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구조	33
그림 2-7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식품안전성 홍보자료	34

제3장

그림 3-1 김치협회와 인삼협회 조직도 비교	51
그림 3-2 국산김치 자율표시 인증	57

제4장

그림 4-1 식품자조금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71
그림 4-2 축산자조금법 제정 추진 경과	73
그림 4-3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추진 경과	75
그림 4-4 법률안 처리 과정 및 단계별 절차	80
그림 4-5 식품자조금의 대상 및 범위	84
그림 4-6 식품자조금의 관리위원 배분 공식 예	95

그림 4-7 식품자조금의 PDCA 성과관리 체계 예	101
그림 4-8 김치시장의 구조	111
그림 4-9 식품자조금 단체의 조직 체계(안)	114
그림 4-10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지침서	119
그림 4-11 김치자조금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129
그림 4-12 aT 청원 비축기지의 건고추 비축창고	131
그림 4-13 김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적용 사례	134
그림 4-14 김치 유산균 상품 사례	137

부록 1

부록 그림-1 닭고기협회 세입(2009~2016)	140
부록 그림-2 닭고기협회 세출비율(2009~2016)	141

부록 2

부록 그림-3 생산실적보고 개요	162
부록 그림-4 생산실적 보고 전체 체계	163
부록 그림-5 생산실적 입력 및 보고 방법	163
부록 그림-6 생산실적 보고 작성 절차	164
부록 그림-7 보고자 정보 및 종업원수 입력	165
부록 그림-8 생산실적 등록/삭제	165
부록 그림-9 생산실적 일괄수정	166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자조금은 1990년대 초반에 임의자조금으로 출발한 이후, 농산 26개 품목¹과 축산 9개 품목²을 대상으로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03년 한돈을 대상으로 자조금 사업을 처음 시작한 축산자조금은 탄탄한 조직력과 규모화된 거출금을 기반으로 소비 홍보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파프리카와 인삼 등으로 대표되는 농산자조금은 축산자조금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기존의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산지 수급 안정을 위해 양파와 마늘을 비롯한 주요 품목에 대한 자조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자조금 통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1 농산자조금의 경우, 의무자조금(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과 임의자조금(단감, 복숭아, 무·배추, 고추, 난, 뽕은감, 가지, 오이, 풋고추, 딸기, 밀, 블루베리)이 조직되어 있음.

2 축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한우, 한돈, 우유, 계란, 닭, 오리, 육우), 임의자조금(사슴, 양봉)으로 조직되어 있음.

- 식품에도 자조금이 도입되어 있는데, 2011년 「김치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김치협회에서 김치자조금을 관리하고 있고, 2019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통주 자조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식품자조금은 1차 산업 생산자인 농민이 참여하는 농·축산자조금과 달리, 식품제조업체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차이점이 있음. 그러나 식품자조금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래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가진 공급자가 단합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과 수급안정 등의 공익적 역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 목적을 가지기에, 농·축산자조금에 준하는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자조금은 농축산자조금과 다른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조금 사업의 대상과 목적 등에서 차이점이 있기에, 기존의 농·축산자조금과 차별화되어 식품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함.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식품자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식품 분야의 특성에 맞는 자조금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자조금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식품 특성에 맞는 자조금의 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2. 선행 연구 검토

- 자조금 관련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축산자조금을 중심으로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 박종수·권용대(2001)는 낙농 자조금 사업의 성과를 우유 자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황태규 외(2016)는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인식을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동명·정경수(2021)는 한우 자조금사업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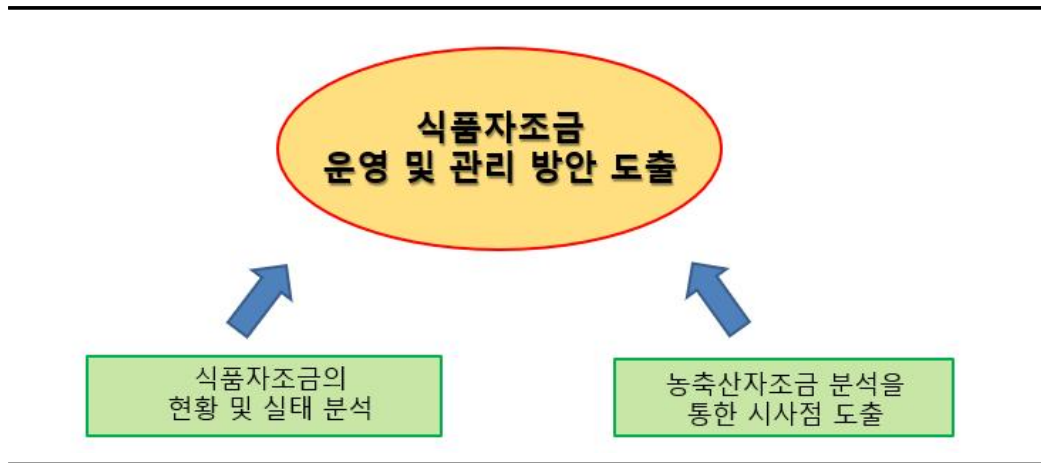
상황을 정리하고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경제학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한편, 농산자조금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는데, 홍나경 외(2012)는 파프리카 자조금의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생산자의 선호를 분석하였고, 윤병삼 외(2013)는 인삼 자조금 납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문 및 모형분석을 적용하여 도출하였으며, 박지원·송양훈(2016)은 배 의무자조금에 대한 거출 기준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논의하였음.

- 우리나라 자조금 전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박성재 외(2012)는 농업부문 자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영수·김성훈(2018)은 우리나라 의무자조금 단체의 경영 효율성을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다음,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한편, 김동환·송정환(2019)은 해외 자조금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자조금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자조금의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자조금 사업의 사회적 효과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농산 또는 축산자조금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여 최근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식품자조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3.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추진 방향은 <그림 1-1>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짐. 먼저 식품자조금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다음, 농산 및 축산분야 자조금에 대한 현황과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이상에서 논의된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식품자조금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함.

그림 1-1 연구 추진 방향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제2장에서는 자조금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함. 구체적으로는 자조금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고, 농·축산 및 식품자조금의 현황을 분석하여 본격적인 연구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함.
- 제3장에서는 식품자조금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우리나라 식품자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식품자조금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쟁점 사항들을 분석하여 논의하도록 함.
- 제4장에서는 앞서 논의되고 도출된 분석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식품자조금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데, 1차 산업인 농축산과 달리 2차 산업인 제조업 특성을 가진 식품자조금의 기본방향과 세부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도록 함. 또한 대표적인 식품자조금인 김치자조금의 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식품자조금이 해당 산업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도록 함.

4. 연구 범위와 분석 방법

4.1.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자조금 조직 및 사업을 주요 연구 범위로 설정하되, 농산 및 축산자조금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함.
 - 농축산 및 식품자조금 관련 주요 이슈 및 사례도 포함

4.2. 분석 방법

- 관련 문헌자료 수집 및 2차 자료(secondary data) 분석
 -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
-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
 - 농축산자조금 및 식품자조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식품자조금의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표적집단면접(FGI) 실시
- 출장 조사
 -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 및 심층면담 조사 (In-depth interview) 실시

제 2 장

자조금의 개념 및 현황

1. 자조금의 개념 및 필요성

○ 자조금(check-off funds)은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조금 회원들이 스스로 돈을 거출하여 모은 자금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박영인(2004)은 자조금을 개인이 개별적으로 풀 수 없는 산업의 발전 저해 요인을 산업 차원에서 공동으로 풀어가기 위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³

- 자조금은 회원 집단의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해 조성되어 사용되는데 단체 행동을 하기에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을 수 있으나, 완전 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이 아닌 현실 시장체제에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인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따른 필요성과 타당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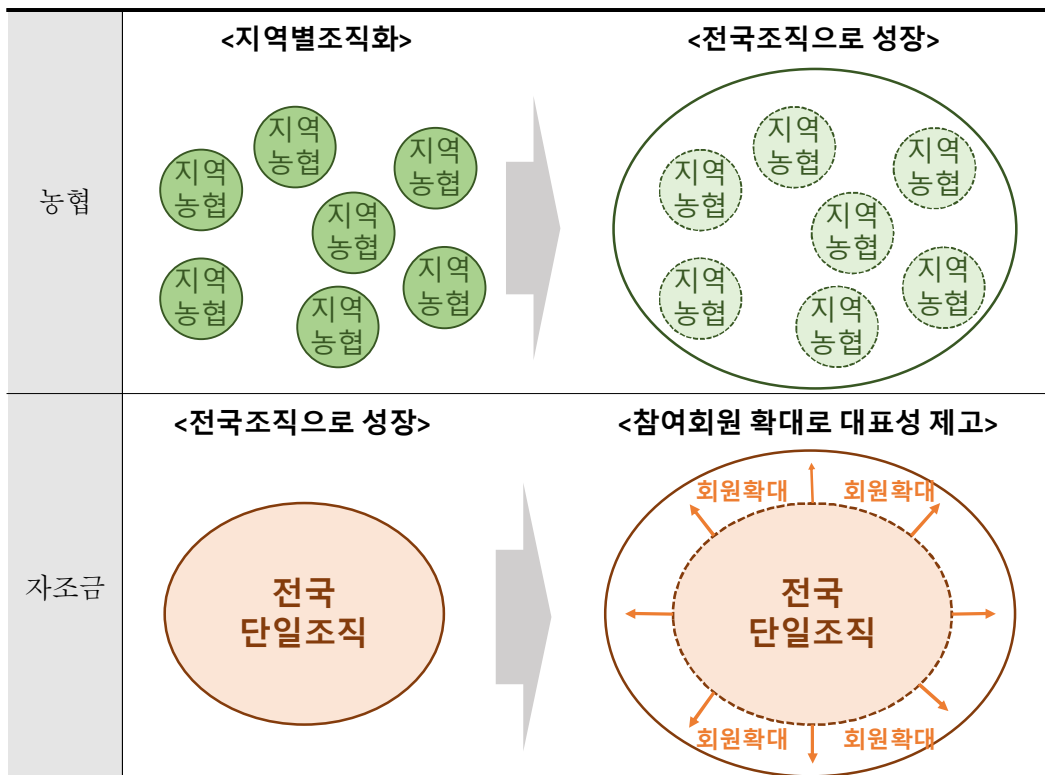
- 자조금은 크게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임의자조금의 경우 회원들의 자조금 납부 의무가 없으나 의무자조금은 납부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여

³ 박영인. 2004. 자조금 20년, 흥익재.

○ 기본적으로 자조금은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산자가 자체적인 경쟁력 및 시장 대응력을 키우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생산자 조직과 차이를 가짐.

- 자조금은 생산자의 조직화보다는 회원들로부터 거출된 자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농협 등의 생산자 조직과 차별되는데, 특히 자조금이 품목 단위로 조성되기에 지역단위로 조직을 구성하는 농협과 구분
- 자조금은 기본적으로 품목당 한 국가에 하나의 단체가 설립되기에, 지역단위 조합들의 연합체인 농업협동조합과 달리 처음부터 전국 규모의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구성되는 특성 보유

그림 2-1 농협과 자조금의 차이



○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의 자조금은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이 연합하여 산업의 발전과 소득의 증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어떻게 보면, 자조금은 특정 집단이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자조금을 조성하는 집단이 근본적으로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시장의 다른 주체에 종속되고 있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이 인정됨.

- 실제 일부 자조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단속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조금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대비가 필요

- 특히, 농식품 생산자의 경우 대형소매업체 등의 수요자보다 거래 교섭력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농식품부에서 자조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도입하여 시행

2. 농축산 및 식품자조금의 현황 및 시사점

2.1. 농축산자조금

2.1.1. 산업 개황

가. 농산업

○ 친환경자조금⁴을 제외한 농산자조금들은 모두 품목을 기준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된 농산자조금의 대상 품목으로는 채소류(파프리카,

콩나물, 양파, 마늘, 무·배추, 고추, 가지, 오이, 풋고추, 밀), 과일류(참다래, 배, 사과, 감귤, 참외, 포도, 복숭아, 뽕은감, 딸기), 화훼류(백합, 절화, 난), 인삼 등이 해당됨. 이들 품목의 생산액 추이가 <표 2-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일부 품목(배, 절화, 단감)을 제외하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배와 단감은 국내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수요 감소의 결과로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어 타 작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 경지면적과 생산액이 감소
- 화훼작물의 경우 국내 수요 감소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절화 생산액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COVID-19)으로 인한 국내 수요 부진이 겹쳐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0억 원(4.6%) 감소⁵

- 농산자조금의 품목 중 생산액 규모가 큰 품목들은 2020년 기준으로 무·배추(1.3조 원), 딸기(1.2조 원), 사과(1.1조 원), 감귤(1조 원), 양파(0.9조 원), 마늘(0.9조 원), 고추(0.9조 원), 인삼(0.8조 원) 등의 순임.
 - 가장 큰 생산 규모를 가진 무·배추는 생산액 규모가 큰 변화 없이 등락을 반복하며 연평균 2.3% 증가

4 친환경자조금은 친환경인증(유기인증, 무농약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품목과 관계없이 친환경인증 취득 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가능함.

5 절화 소비의 경우, 입학식과 졸업식,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에 따른 소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행사 자체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소비 위축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음.

표 2-1 농산자조금 품목의 생산액

단위: 십억 원

품목	2001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인삼	373.5	580.3	938.5	819.4	830.3	702.9	819.1
백합	29.2	34.6	29.3	17.1	12.0	11.5	9.7
참다래	21.9	31.5	68.2	74.3	73.0	82.5	75.6
배	419.9	338.7	550.0	425.9	311.7	451.3	276.2
파프리카	0.0	0.0	173.7	198.9	266.1	253.0	298.7
사과	437.2	467.1	801.6	1,448.4	968.2	1,077.2	1,100.4
감귤	389.2	810.8	931.1	636.7	960.9	848.3	989.6
참외	365.9	325.5	480.4	375.2	327.6	391.4	385.6
절화	308.9	451.7	297.6	217.4	178.6	178.1	169.9
포도	253.1	496.2	667.6	586.1	623.9	645.8	693.0
양파	287.6	214.8	717.8	900.3	914.1	702.4	943.1
마늘	583.2	535.2	1,179.4	773.0	1,015.1	933.9	856.5
단감	198.6	383.7	276.0	223.6	219.0	198.3	197.8
복숭아	156.5	199.6	398.4	455.6	728.2	646.0	600.5
무·배추	1,011.2	1,002.2	1,209.2	1,103.7	1,499.6	1,460.4	1,335.3
고추	583.2	535.2	1,179.4	773.0	1,015.1	933.9	856.5
난	124.1	12.1	85.2	58.4	46.1	44.8	40.7
뽕은감	55.5	238.0	210.6	158.8	176.3	193.5	136.0
가지	7.2	19.4	13.3	30.9	29.0	27.6	32.4
오이	430.5	429.0	485.3	454.1	602.6	547.6	569.1
풋고추	600.4	288.2	566.4	703.7	613.8	619.6	710.5
딸기	585.4	642.6	1,050.3	1,295.9	1,293.6	1,509.3	1,227.0
밀	2.5	6.9	34.2	27.6	25.1	14.6	16.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

주) 친환경은 다품목으로 집계가 어렵고, 콩나물은 관련 자료 부족으로 제외함

○ 농산자조금 품목의 수출실적을 보면, 2020년 금액 기준으로 파프리카, 배, 딸기 순으로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삼의 경우 물량에 비해 금액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

표 2-2 농산자조금 품목의 수출실적

단위: 톤, 천 불

품목	2018년		2019년		2020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인삼	43	1,895	31	1,503	32	1,270
백합	787	6,922	616	6,110	486	5,000
키위	438	2,050	693	2,212	389	1,328
배	32,947	80,059	30,730	83,271	23,590	71,740
파프리카	31,920	92,260	35,325	91,515	30,274	86,437
사과	2,867	7,640	2,889	7,025	1,952	5,936
감귤	1,763	2,365	2,305	2,932	5,996	5,982
포도	1,424	14,311	2,012	23,525	2,108	31,150
양파	3,462	1,066	50,420	16,668	5,622	2,747
마늘	86	661	2,030	4,643	3,130	10,518
복숭아	462	2,330	601	2,626	508	2,502
무	3,972	2,787	4,256	2,640	6,943	4,698
배추	23,596	15,316	28,688	17,868	24,413	16,766
고추	2,952	14,931	3,517	17,418	4,047	20,636
난	166	1,188	90	926	29	374
감	5,716	7,603	5,463	8,328	5,609	9,331
가지	69	141	124	282	129	321
오이	260	849	228	878	211	613
풋고추	2,952	14,931	3,517	17,418	4,047	20,636
딸기	4,895	47,511	5,740	54,448	4,823	53,747
밀	40,377	20,233	43,735	23,211	45,831	25,835

자료: 2020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 품목 중 파프리카는 대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지속적인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배는 국내 시장에서의 부진과 달리 2020년을 제외하고는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딸기는 최근 도입되고 있는 프리미엄 신품종의 품질 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아 성장세를 보임. 한편, 포도는 전체적인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품종(거봉, 샤인머스켓)의 면적 증가를 통한 수출 실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인 상황으로 분석됨.

나. 축산업

- 축산자조금 품목들의 생산액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한돈, 한우, 낙농, 육계, 계란, 오리, 육우, 양봉, 사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품목별 생산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 확대 등에 따른 결과임.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외식 시장이 위축된 반면 가정식 소비가 증가하여 2020년 생산액이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세부 품목별 증감 추이를 보면 한돈, 계란, 낙농, 한우, 육우, 사슴은 증가한 반면 육계, 오리, 양봉의 생산액은 감소
 - 육류인 한돈, 한우, 육계(닭고기)의 경우 세 품목 모두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한우는 2015년 4.4조 원에서 2020년에서 5.7조 원으로 규모가 가장 많이 성장
 - 최근 5개년 동안에는 한돈, 한우, 육계(닭고기) 각각의 생산액 평균 증가율이 0.9%, 1.6%, 5.4%에 이르러 한우 생산액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상황

표 2-3 축산자조금 품목의 생산액

단위: 십억 원

품목	2001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한돈	2,692.3	3,758.6	5,322.7	6,967.1	7,118.5	6,392.4	7,177.5
계란	827.6	1,085.3	1,340.9	1,836.9	1,277.5	1,410.5	1,633.8
낙농	1,429.1	1,551.3	1,693.4	2,285.1	2,131.4	2,151.9	2,196.0
육계	863.3	1,113.2	2,146.0	1,909.5	2,259.0	2,102.6	2,027.0
한우	1,699.7	3,147.9	4,582.0	4,440.9	4,826.1	5,400.6	5,724.6
오리	382.0	649.0	1,305.9	814.1	1,326.9	1,269.1	813.4
육우 ¹⁾	-	-	281.3	266.8	265.8	252.3	267.6
사슴	18.8	29.6	23.1	18.7	21.9	11.8	23.2
양봉	165.3	192.0	433.2	356.7	259.7	562.0	139.2

주 1) 육우는 농림업생산지수 통계에 2006년부터 기재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

○ 축산자조금 품목의 수출액 규모는 2020년 기준 육계, 한돈, 낙농, 한우, 계란, 양봉, 오리 순으로 집계되는데, 농산자조금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사료비 등 축산물 생산 원가가 높아 수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세부 품목별로 보면 육계의 수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격이 저렴한 산란노계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

표 2-4 축산자조금 품목의 수출실적

단위: 톤, 천 불

품목	2018년		2019년		2020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한돈	922	5,205	1,293	6,072	4,455	18,548
계란	150	1,042	279	599	1,743	3,171
낙농	9,459	16,579	10,830	18,963	10,324	17,880
육계	32,639	41,863	49,542	61,492	55,807	75,739
한우	484	5,364	230	4,417	308	4,628
오리	2,627	4,818	1,614	2,907	1	8
양봉	37	259	19	186	9	105

자료: aT, 2020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12. 자조금 현황

가. 농산자조금

(ㄱ) 개황

○ 농산자조금은 1994년에 결성된 대한두채협회(콩나물)자조금이 최초인데,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정과 함께 파프리카와 참다래가 처음으로 임의자조금 조직을 결성하고 자조금 사업을 시행함. 이후, 2013년 「농수산물자조금법」이 제정되어 농산자조금 사업의 법적 기반이 확충되어 농산부문 의무자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2021년 12월 기준 농산자조금 단체는 의무 14개, 임의 11개로 총 25개가 운영 중인데, 구체적인 현황은 <표 2-5>와 같음.

－ 세부적인 품목별 분포를 보면 과실류 7개, 과채류 4개, 화훼류 3개, 인삼, 밀, 육묘, 친환경 등 기타 4개 품목에 대한 자조금이 운영 중

표 2-5 농산자조금 단체 등록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품목	2018년 생산액	자조금 단체명	설립 연도	의무 전환 시기
의 무 (14)	인삼	8,303	(사)한국인삼협회	2014	2015. 5. 14.
	친환경	12,868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2016	2016. 7. 1.
	백합	120	(사)한국백합생산자연협회	2009	2017. 1. 1.
	참다래	730	(사)한국참다래연합회	2009	2017. 2. 15.
	배	3,117	(사)한국배연합회	2010	2017. 7. 6.
	파프리카	2,661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2000	2017.7. 14.
	사과	9,682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2017. 7. 21.
	감귤	9,609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2017. 9. 29.
	콩나물	1,692	(사)대한두채협회	1994	2017. 11. 30.
	참외	3,276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2006	2018. 11. 8.
	절화	1,786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절화)	2019	2019. 9. 18.
	포도	6,239	(사)한국포도협회	2010	2019. 12. 30.
	양파	9,141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2010	2020. 7. 24.
	마늘	10,151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2010	2020. 7. 24.
임 의 (11)	단감	2,190	(사)한국단감연합회	2009	전환 추진
	복숭아	7,282	(사)한국복숭아연합회	2008	전환 추진
	무·배추	14,996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협회	2010	전환 추진
	고추	10,179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2010	전환 추진
	난	464	(사)한국난재배자협회	2003	전환 추진
	뽕은감	1,763	(사)한국뽕은감협회	2018	전환 추진
	가지	611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2005	전환 추진
	오이	6,026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2008	전환 추진
	풋고추	6,138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2012	전환 추진
	딸기	12,936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2006	-
	밀	251	(사)국산밀산업협회	201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5월 19일 보도자료.

○ 농수산물자조금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의 정의와 의무, 임의자조금의 구성 주체, 설치, 자조금의 용도, 재원 마련, 운영기관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자조금의 설립 및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수산물자조금은 자조금 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

표 2-6 농수산물자조금법

항목	농산물자조금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구성 주체	① 농업인, ② 농업경영체, ③ 생산자단체, ④ 기타	
자조금 기관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④ 사무국, ⑤ 대납기관, ⑥ 수납기관	임의자조금위원회(15인 이하)
설치 요건	농식품부가 설치계획서 승인 → (총회) 대의원의 2/3 이상 투표, 투표자의 2/3 이상 찬성	설치계획서 및 농수산업자 10/100 이상의 서명 → 농식품부 승인
거출 한도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1000 이내	제한 없음
납부 방법	대납기관, 수납기관 지정	
폐지 요건	농수산업자 1/10 이상 서명 → 폐지요청 → 투표 농수산업자 1/2 이상 요청 → 자동 폐기	
벌칙	과태료 부과(1천만 원 이하) ① 자조금 용도 위반 ② 의무거출금 수납의뢰 거부 또는 수납업무 중단 ③ 의무자조금 찬반투표 미실시 폐지, 유사명칭 사용 ④ 의무자조금 폐지 후 수납 지속 ⑤ 평가보고서 거짓 제출 또는 평가 받지 않음	
	과태료 부과(300만 원 이하) ① 의무자조금 조성 및 운용사항 미공시 또는 거짓 공시 ② 납부일자 이내 의무거출금 미납부 ③ 생산·유통 자율조절 위반(의무) ④ 평가보고서 미제출	

자료: 주종윤, 자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2020)

(L) 예산 및 거출

○ 농산자조금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의무/임의 거출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의 지원금,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의무/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히 정부는 자조금에 대한 1:1 대응 보조형식으로 지원금을 보조하여 농산자조금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자조금 단체의 당해연도 사업 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 운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농산자조금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매칭 비율을 50% ~ 100% 범위로 차등 적용

– 농산자조금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2017년 76억 원에서 2021년 106억 원으로 39.0% 증가

표 2-7 자조금 단체 운영실적 평가등급 및 매칭비율

구분	우수(80점 이상)	보통(60~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의무자조금	100%	90%	80%
임의자조금	70%	60%	50%

자료: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표 2-8 농수산자조금 정부예산

단위: 백만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5,220	15,220	16,220	17,220	20,160
국고 ¹⁾	7,610	7,610	8,110	9,110	10,580
자부담	7,610	7,610	8,110	8,110	9,580

주 1) 2020년 ~ 2021년 국고 예산에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원금(1,000백만 원) 포함

자료: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농산자조금의 기본 재원인 거출금 현황이 <표 2-9>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친환경자조금(38억 원), 사과자조금(30억 원), 감귤자조금(27억 원), 인삼자조금(23억 원) 순임. 반면 키위를 포함한 일부 농산품목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품목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9 농산의무자조금 예산규모(2021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자조금명	합계	거출금	정부지원금
친환경	3,824	1,912(50%)	1,912(50%)
파프리카 ^{주1)}	2,250	1,314(58%)	1,065(42%)
백합	1,400	700(50%)	700(50%)
감귤	2,366	1,400(59%)	966(41%)
배	1,571	950(60%)	621(40%)
사과	3,000	1,500(50%)	1,500(50%)
키위	452	226(50%)	226(50%)
인삼	2,314	1,434(62%)	880(38%)
절화	930	550(59%)	380(41%)
참외 ^{주2)}	717	380(53%)	337(47%)
포도	811	500(62%)	311(38%)
콩나물 ^{주2)}	327	127(39%)	200(61%)
마늘	1,511	857(57%)	654(43%)
양파	1,619	486(30%)	1,133(70%)

주 1) 파프리카는 2019년 조성현황 적용

주 2) 참외, 콩나물은 2020년 조성현황 적용

자료: 품목별 자조금 홈페이지, 각 자조금 내부자료

- 농산자조금의 거출 기준은 크게 경지면적 기준 거출, 봉지·박스 기준 거출, 출하액 기준 거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지면적 기준 거출방식을 적용함.

표 2-10 농산의무자조금 거출기준

품목	거출대상	거출기준
친환경	생산자	유기) 논 4원, 밭 5원/m ² 무농약) 논 3원, 밭 4원/m ²
	생산자단체	연 100~200만 원
파프리카	생산자	302.5원/m ²
백합	농업인, 법인	4000원/ha
		공판장 경매가격 2%, 수출 본당 30원
감귤	농업인	출하액의 0.25%
	생산자단체, 유통조직	매출액의 0.05%
배	농가	2원/배 봉지 1매
사과	농가	20원/3.3m ²
	회원단체	취급액 기준 차등부과
키위	농업경영체	30원/m ²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취급액의 0.3% 이내
인삼	생산농가	24원/m ²
	자체검사업체	300~900원/kg
	농협	1.2원/m ²
절화	생산자	공영시장 출하액 0.5% ¹⁾
	생산자단체	전년도 출하액 0.5%
	유통업자	전년도 매출액 0.5%
참외	농업인, 법인	20원/10kg or 30원/3.3m ²
	생산자단체	전년도 취급액의 0.5% 이내
포도	농업인	10원/m ² 이내
	생산자단체	전년도 취급액의 0.07% 이내
콩나물	농업인, 법인	10원/kg
마늘	농업인, 법인	5원/m ² 2)
	생산자단체	취급액 기준 차등부과
양파	농업인, 법인	4원/m ²
	생산자단체	취급액 기준 차등부과

주 1) 3년간 단계적 상승(0.5% -> 0.75% -> 1.0%)

2) 1,000m² 증가시마다 구간별 5,000원씩 추가 산정

자료: 각 자조금 홈페이지

- 농산자조금의 거출방법은 대부분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형식을 취하고 있음. 경지면적 기준 거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경지면적 조사와 임대농의 납부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거출금 조성 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배의 경우에는 봉지 기준으로 거출을 진행하여 조성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배 생산자의 배 봉지 구입은 농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봉지당 거출은 농협에서 봉지 구입 시 한 번에 공제될 수 있다는 장점 보유
 - 마늘, 양파의 경우 2021년 경작의무신고제 도입으로 자조금의 수급 조절 역할과 거출금 납부 확대 효과 기대
- 자조금 거출 규모 확대는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일례로 정부는 「농수산물자조금법」의 일부개정법률 공포를 2020년에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농산자조금 거출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⁶

(ㄷ) 사업 및 조직

- 농산자조금의 사업예산은 「농수산물자조금법」에 의거하여 1) 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 2) 자조금 교육 및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3)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사업 4) 소비 촉진, 품질

⁶ 정부는 2020년 5월 19일 「농수산물자조금법」의 개정안을 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1)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 2)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 관련 정부 정책사업 지원제한, 3) 자조금 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을 합법화한 것임. 이를 통해, 농산자조금 거출 대상을 확대하고,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하였으며,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합법화를 통해 자조금 단체의 대의원선출, 명부작성 등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자조금 사업 성과평가에 쓰이며, 각 항목별로 최대 국고 보조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표 2-11 농산의무자조금 국고 보조율 및 사업비 용도

관	항	최대국고 보조율	주요내용
자 조 금 사 업 비	소비홍보	40%	광고, 소비촉진
	수급안정	70%	수급조절, 가격안정, 수급안정 예비비
	유통구조개선	60%	물류, 포장재, 유통개선, 유통협력, 소비자협력
	경쟁력제고	60%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수출활성화	60%	수출마케팅지원, 전문가·바이어초청, 해외시장개척, 수출물류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	50%	거출홍보, 교육, 정보제공, 선진지견학·해외연수
	조사연구	60%	조사·연구용역, 연구회, 성과평가
	선거	50%	회원선거
	수납위탁수수료	50%	수납위탁에 대한 수수료지출
	운영관리	50%	사무국 운영관리

자료: 자조금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농산자조금 단체의 실제 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소비 홍보와 수급 안정에 대한 사업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음. 이어서 자조금 납부자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사업에 자조금 사업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표 2-12 농산의무자조금 사업추진현황(2021년)

단위: 백만 원

	합계	소비 홍보	수급 안정	교육및 정리정돈	유통구조 개선	경쟁력 제고	수출 활성화	조사 연구	기타
친환경	3,824	1,710	322	542	260	-	25	160	805
파프리카	2720	723	600	10	-	728	176	50	433
백합	1,400	200	250	40	75	160	410	80	185
감귤	2,366	714	989	121	50	53	40	30	370
배	1,571	420	610	56	-	-	70	45	370
사과	3,000	1,100	780	621	30	70	50	60	289
키위	382	10	153	90	20	-	-	12	97
인삼	2,314	494	400	300	30	55	60	25	950
절화	930	251	279	47	9	28	9	56	251
참외	690	358	170	57	-	-	30	6	69
포도	811	219	203	185	-	-	20	17	163
콩나물	327	174	-	-	-	57	-	15	81
마늘	1,511	70	489	187	20	190	20	70	464
양파	1,619	81	324	502	81	81	48	81	421

주1) 2020년 기준

자료: 품목조직화연구소, 양파의무자조금 발전계획, 각 자조금 내부자료

- 농산분야 의무자조금 운영조직은 <표 2-13>과 같이 총회, 대의원회,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됨. 대의원회(총회)는 자조금 단체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업무 보조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음
-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자조금 조직 운영과 자조금 관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
 - 총회는 원예 자조금에만 존재하며 대의원회가 대체 가능

표 2-13 농산자조금의 운영조직 구조



구분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총회 (임원 구성)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감사 2~5명 임기는 각각 2년	별도 규정 없음
(대의원회)	농산업자 150명 초과 시 총회를 갈음하여 둘 수 있음. 대의원 임기는 4년	별도 규정 없음
(운영)	정기총회 매년 1회, 임시총회 수시	별도 규정 없음
(의결)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금액 및 한도 사업계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별도 규정 없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제14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등 11~21명 임기는 위원장·부위원장 2년, 위원 4년	임의자조금위원회(제25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 등 15명 이하 임기는 위원장·부위원장·감사 2년, 위원 4년
(의결)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납부일자, 수납 의무자조금 사업계획, 운영계획 수립·변경,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보고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집행 등	임의자조금의 폐지 임의거출금의 금액 임의자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결산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사무국)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사무보조 2개 이상 품목통합 사무국 설치 가능	별도 규정 없음(의무자조금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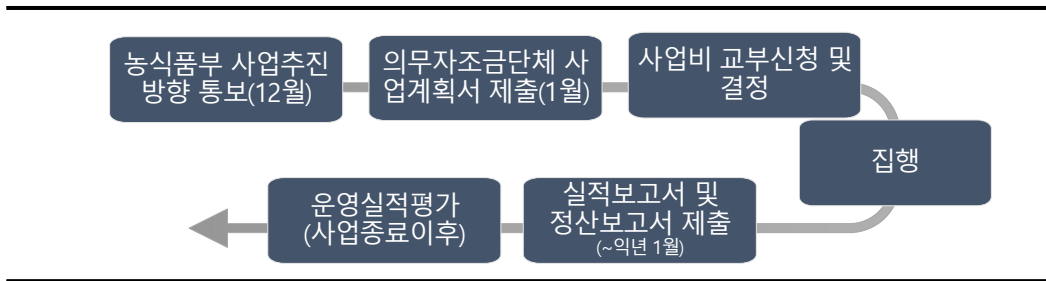
자료: 자조금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당해년도 자조금의 운영을 위해 자조금 운용계획안을 대의원회(총회)의 의결을 받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게 되어 있음. 자조금의 사업비 회계는 타 회계와 구분되어 처리되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당해 연말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함. 이후 자조금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비가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음.

- 자조금 단체는 사업 운용 및 성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

그림 2-2 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추진체계



- 자조금(거출금)의 수집을 위해 대납기관 또는 수납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대납기관은 납부자의 거출금을 납부받아 자조금 관리기구에 대납해주는 기관이고, 수납기관은 자조금 관리기구가 직접 수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위탁받은 기관임. 법으로 정해진 농산자조금 수납기관은 도매시장법인, 산지유통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종자업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협동조합, 인증기관 등이 있음.

(ㄹ) 관련 이슈 및 과제

- 2013년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이후 농산자조금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향후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음. 첫째로 농산자조금의 영세성 문제인데, 축산자조금에 비해 거치금 및 사업 규모가 작아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최근 정부가 농산자조금을 기존의 소비 확대의 목적 외에 수급 안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자조금 규모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농산자조금의 경우 원예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원예분야 품목별 생산액은 1조 내외로 축산업에 비해 산업규모가 영세하고, 다수의 생산자가 종사하고 있어 자조금 거출 규모화에 어려움 발생
 - 일례로 인삼자조금의 경우 2020년 조성규모가 26억 원으로 이를 수급조절에 30%를 배정하여도 7.6억 원에 불과한데, 인삼 재고가 2조 원 이상 쌓여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한계
 - 농식품부가 의무자조금 수를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할 예정인데, 정부예산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개별 자조금 당 보조금 매칭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우려
- 두 번째, 자조금 거출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농산자조금의 거출 기준으로 경지면적을 적용하는 경우 경지면적을 증명할 방법이 모호하고 임대농의 납부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삼, 양파자조금이 2021년부터 경작신고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임. 또한 거출 부담을 지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불만과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회원들의 인식 전환에 시간이 걸리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연계성 확대를 위해 경작신고제, 정부, 지방 농림보조사업 신청시 자조금 납부 사실 증명서 첨부이 의무화되는 추세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전인 상황
- 세 번째, 의무자조금 조직의 독립성 문제임. 원칙적으로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품목협회(생산자단체)와 분리되어야 하나, 농산자조금은 생산자단체인 협회의 강한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어 자조금 사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일례로 친환경과 인삼의 운영구조를 비교해 보면 둘 다 협회와 관리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으나, 친환경의 경우 두 조직의 구성원이 거의 동

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인삼의 경우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품목협회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어 자조금 사업추진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평가

그림 2-3 농산자조금 운영구조 예시(친환경, 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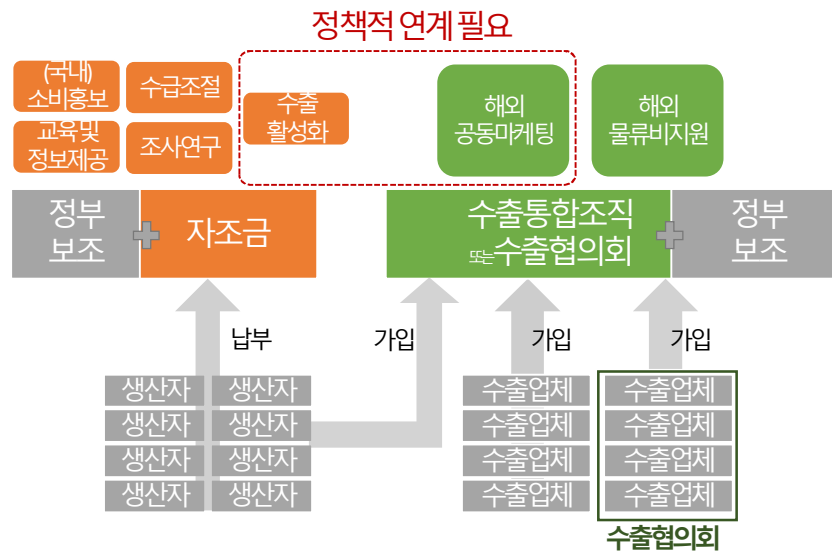
	친환경	인삼
구조		
문제점	분리는 되어있으나 협회와 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거의 동일	분리는 되어있으나 관리위원회가 협회의 강한 영향력 아래 운영 중

○ 네 번째, 소비 증진의 주요 수단인 수출 확대를 위한 자조금의 역할이 미흡함. 자조금의 사업에는 소비 홍보 외 수출 확대사업이 있으나 현행 농산자조금의 수출사업은 거의 명목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현재 정부가 신선농산물의 판매 확대 및 해외 공동마케팅 사업추진을 위해 수출협의회 및 수출통합조직 등을 조직하여, 연간 79억 원⁷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자조금과의 협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함.

- 자조금과 수출협의회의 수출사업 협업 구조 세팅이 중요한데, 수출협의회와 함께 해외 공동마케팅 사업추진 등의 방안 모색 필요

7 농림사업지침 판매조직육성사업의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그림 2-4 자조금-수출통합조직이 연계한 수출사업 연계안



나. 축산자조금

(ㄱ) 개황

○ 축산자조금은 1992년 임의자조금 형태로 양돈과 양계 분야에서 최초로 추진되었으며, 판로 확대, 수급 안정과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2005년 「축산자조금법」 제정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의무 7개, 임의 2개로 총 9개의 축산자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4>와 같음.

- 축산자조금의 경우 축종별로 자조금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양계와 육계의 사례 또는 한우와 육우의 사례 등과 같이 하나의 축종이 더 세분화된 경우 발생

표 2-14 축산자조금 단체 등록현황

구분	품목	자조금 단체명	단체설립년도	의무 전환
의무 (7)	한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1992	2004
	양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1992	2009
	낙농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1999	2006
	육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2003	2009
	한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05	2005
	오리	(사)한국오리협회	1992	2013
	육우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09	2014
입의 (2)	사슴	양록자조금관리위원회	2004	-
	양봉	(사)한국양봉협회	1967	-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2012)

○ 축산자조금의 법적 근거인 「축산자조금법」은 축산자조금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축산자조금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농수산자조금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자조금 구성 주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가축 사육자를 명시하고 거출 한도 기준을 농수산자조금의 절반 수준으로 한 것⁸ 등이 해당

⁸ 축산자조금의 거출 한도가 농산자조금의 절반 수준으로 정한 것은 농산물에 비해 축산물의 일반적인 거래 규모가 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2-15 축산자조금법

항목	축산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구성 주체	① 축산물 생산자, ② 가축 사육자,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조금 기관	① 대의원회,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③ 사무국, ④ 대납기관, ⑤ 수납기관	임의자조금위원회(15인 이하)
설치 요건	농식품부가 설치계획서 승인 → 대의원의 2/3 이상 투표, 투표자의 2/3 이상 찬성	농식품부가 설치계획서 승인 → 축산업자의 5/100 이상 서명
거출 한도	가축/축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5/1000 이내	제한 없음
납부 방법	중도매인, 수납기관 지정	
폐지 요건	축산업자 1/10 이상 또는 축산물생산자 1/4 이상 서명 → 폐지요청 → 투표 축산업자 1/2 이상 요청 → 자동 폐기	
벌칙	과태료 부과(1천만 원 이하) ① 자조금 용도 위반 ② 의무거출금 수납의뢰 거부 또는 수납업무 중단 ③ 의무자조금 찬반투표 미실시 폐지, 유사명칭 사용 ④ 의무자조금 폐지 후 수납 지속 과태료 부과(300만 원 이하) ① 의무자조금 조성 및 운용사항 미공시 또는 거짓 공시 ② 납부일자 이내 의무거출금 미납부 ③ 생산·유통 자율조절 위반(의무) ④ 평가보고서 미제출 및 거짓제출 또는 평가 거부, 방해, 기피자	

자료: 주종윤, 자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2020)

(L) 예산 및 거출

- 축산자조금 사업을 위한 재원은 농산자조금의 경우와 유사한데, 전반적인 자조금 규모가 농산자조금에 비해 매우 큰 특성을 가짐. 일례로

3대 축산자조금인 한우, 한돈, 우유자조금을 모두 합치면 2021년 기준 821억 원이며, 전체 축산자조금 규모는 960억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함.

- 2021년 기준 한우자조금 규모는 378억 원, 한돈 328억 원, 우유 115억 원에 달하는 반면, 육우, 계란, 오리 의무자조금 등은 20~3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표 2-16 축산자조금 예산규모(2021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자조금명	합계	거출금 ^{주1)}	정부지원금
한우	37,758	28,433(75%)	9,325(25%)
한돈	32,780	18,392(77%)	5,350(23%)
우유	11,503	6,403(56%)	5,100(44%)
육우	1,902	990(52%)	912(48%)
계란	2,550	1,112(51%)	1,067(49%)
닭고기 ^{주2)}	5,738	3,000(52%)	2,738(48%)
오리	3,045	1,645(54%)	1,400(46%)
사슴 ^{주3)}	216	108(50%)	108(50%)
양봉 ^{주4)}	510	330(60%)	180(40%)
합계	96,002		

주 1) 거출금에 전년도 이월금 등 포함

주 2, 3, 4) 관련자료 부족으로 2019년 기준 적용

자료: 각 자조금 홈페이지

- 축산자조금 또한 정부의 매칭을 통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조금의 규모 증대에 따라 당초 1:1로 정해진 보조금 매칭 비율이 한돈의 경우 70:30, 한우 경우 60:40으로 낮아지고 있음. 그 결과 <표 2-17>에 정리된 정부 지원 예산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자조금 규모와 관계없이 예산 규모가 26억 원으로 일정한 상황임.

표 2-17 축산자조금 정부예산

단위: 백만 원

	2017	2018	2019	2020
합계	52,000	52,000	52,000	52,000
국고	26,000	26,000	26,000	26,000
자부담	26,000	26,000	26,000	26,000

자료: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서

- 축산자조금의 거출 기준은 대부분 가축 마리당으로 부과되며 우유의 경우 리터당 부과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8>과 같이 정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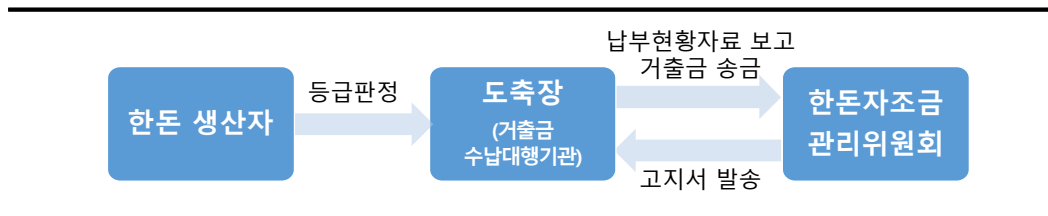
표 2-18 축산자조금 거출기준

형태	거출시점	축종	거출단가		
의무	2005	한우	20,000원/두		
	2004	한돈	1,100원/두		
	2006	우유	2원/리터		
	2015	오리	사육농가	5원/마리	
			계열업체	5원/도축마리	
			임도업 및 개인업체	5원/도축마리	
			종오리	1,000원/마리	
	2009	계란	산란성계	80원	
			산란중계	80원	
			산란중추	10원	
	2009	닭고기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중계	30원	
2014	육우	15,000원/두			
임의	2009	양봉	회원: 30천 원, 업체: 1,000천 원, 임원: 300천 원/인		
	2007	양육	엘크: 10,000원, 레드디어: 2,000원, 꽃사슴·기타: 1,000원/두		

자료: 각 자조금 홈페이지

- 자조금의 거출 방법은 의무자조금인 경우 자조금이 지정한 수납대행 기관을 통해서 일괄 납부됨. 한우·한돈·육우는 도축장에서 직접 수납·거출하며 우유는 집유장(유가공공장)에서 정산·공제한 후 수납을 대행하고 있음.

그림 2-5 한돈 수납방법의 예시



(ㄷ) 사업 및 조직

- 축산자조금 단체의 사업은 농산자조금의 경우와 유사한데, 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소비 홍보, 수급 안정, 교육 및 정보제공 순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한돈과 한우의 경우 소비 홍보를 위해 집행하는 사업 예산이 연간 100억 원이 넘고 있어, 해당 자조금 사업이 집행하기 쉬운 홍보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평가

표 2-19 축산의무자조금 사업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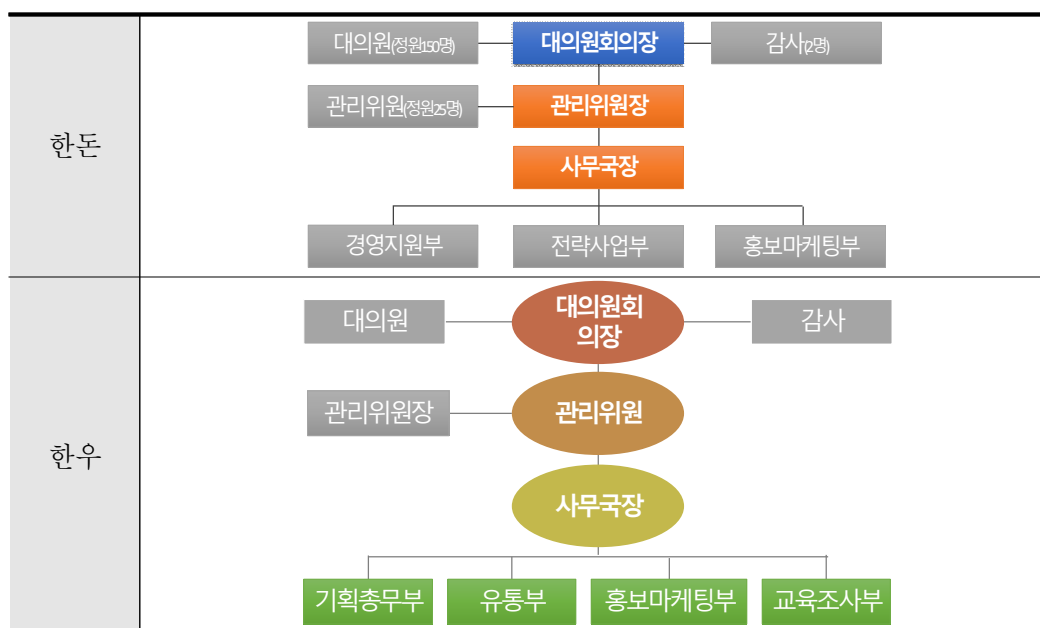
자조금명	합계	소비홍보	수급안정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유통구조	기타
한돈	32,780	11,219	2,610	4,736	546	714	12,954
한우	37,758	10,831	9,974	6,179	1,088	535	9,150
육우	1,902	833	545	255	0	0	269
우유	11,503	2,952	4,750	2,693	140	0	969
계란	2,550	400	1,190	399	110	0	451
닭고기 ¹⁾	-	-	-	-	-	-	-
오리	3,045	992	1,020	548	120	0	365

주 1) 닭고기 자조금은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이 없음(2016년이 마지막)

자료: 각 자조금 홈페이지

- 축산자조금 조직은 대의원회-자조금관리위원회-사무국으로 이어지는 조직구성 및 운영구조로, 농산자조금의 경우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

그림 2-6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구조



자료: 한돈자조금,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ㄹ) 관련 이슈 및 과제

- 2005년 「축산자조금법」 제정 이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장해온 축산자조금은 축산물 소비홍보를 통한 판매 활성화를 통해 축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상대적으로 명확인 자조금 거출 시스템과 규모화된 사업을 통해 다른 자조금의 본보기가 되고 있기도 함.
 - 특히, 한우와 한돈자조금의 경우 ‘한우’, ‘한돈’ 이름 자체를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정도의 성과 창출

그림 2-7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식품안전성 홍보자료



자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SNS

- 그럼에도 축산자조금 또한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규모화된 자조금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한돈, 한우, 우유 3대 의무자조금의 총액이 8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사업 운영의 전문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세무 및 회계 전문가 없이 초기 자조금 운영 모델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운영의 전문성, 자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에 대한 문제 발생 우려
 - 전술한 바와 같이, 자조금 사업의 상당 부분이 소비 홍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문제
 - 대규모 자조금을 운영하는 대표 축종과 달리 닭고기, 오리, 육우 등 30억 원 미만의 자조금을 운영하는 조직이 병존하는 등 자조금 축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개별 자조금 조직의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 제기
- 두 번째, 자조금 운영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축산자조금은 농산자조금과 동일하게 발족 시 협회(축종별 생산자단체)와 농협이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조금을 발족하였는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대의원 선출 또한 협회가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조금 규모가 100억을 넘어간 현재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 때문에 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가 자조금 관리위원회로 이어지고 축산단체장이 자조금 관리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임.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축산단체에서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협회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축산자조금의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자조금관리위원회 간 합리적이고 명확한 업무 분담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
 - 현재 자조금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는 자조금 대의원회이지만 실상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

⁹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장이 협의해 위촉하되 생산자 8명 이내, 축산단체 임원 4명 이내, 학계·소비자 및 유통전문가 각 1명으로 구성됨.

- 세 번째, 자조금 거출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농산자조금에 비해 상대적인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축산의 3대 자조금을 제외하면 축산자조금의 미납과 미거출 문제로 인한 자조금의 무임승차 이슈가 심각한 상황임. 축산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수납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점검이 어렵고, 법률적으로 강제력 동원이 불가능하기에 관리위원회와 미납기관 사이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무임승차 이슈와 내부갈등 등으로 인해 2019년 의무자조금 폐지 직전까지 간 사례 발생¹⁰
 - 이에 축산물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수납기관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함께 정부의 정책 지원 자격 제한과 같은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방안 논의 중

- 네 번째, 자조금을 불공정거래로 보는 시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산업에 대한 부당행위 처분 사례인데, 공정위는 2017년 7월부터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토종닭 9개 사업자에 대해 출고량 제한, 제비용 인상 및 수율 인하 합의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음.
 - 닭고기 계열화업체의 삼계탕용 신선육 판매가격 및 출고량 합의를 담합 행위로 간주
 - 과징금이 부과된 닭고기 업체는 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시기에 맞춰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담합하고, 할인액도 합의를 통해 지정했다고 판단
 - 출고량 조절 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것이 아닌 이익 보전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

¹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할 것.

- 최근 몇 년간 가금 업계는 가금육(육계, 토종닭, 오리)의 AI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가금 생산자단체들이 축종별 수급조절 협의회를 소집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승인하에 해당 축종별 자조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급 조절 활동을 전개하였음. 그러나, 공정위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¹¹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가금업계가 공정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출하조절을 실시한 것을 문제 삼았음.
- 가금업계는 수급불안이 예상되면 각 축종 생산단체가 농식품부의 시책에 의거하여 수급조절 협의회와 자조금을 통한 수급 조절로 농가들을 보호해 왔다고 주장하고, 가금 산업 특성상 농가 90% 이상이 계약 사육을 하기 때문에 유통·가공을 담당하는 계열화업체 관계자들도 수급조절 협의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자조금의 축산물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한 시장개입의 근거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함.

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수급조절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축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등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해당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등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기본적으로 자조금의 수급 조절 사업은 생산자의 공급 물량 조정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로 보여질 수 있기에, 농축산업의 산업적 특성을 강조하는 등의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세부 절차에 대한 불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사전 대응이 중요함.
 - 특히, 수급조절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 인상 요인이 확인될 경우 공급자의 담합 등의 행위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정위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실정
 -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 등 세부 절차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준수하는 것이 관련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

2.2. 식품자조금

2.2.1. 산업 개황

가. 김치산업

- 김치산업은 5대 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으로 지칭되는 주요 채소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가공업인데 국산 농산물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농업과의 밀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짐. 우리나라 김치 공급량은 2015년 162만 톤에서 2019년 188만 톤으로 15.7% 증가하였는데, 집에서 직접 담가 먹는 가구 내 자가소비량이 감소한 반면 상품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김치 소비패턴의 변화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2-20 최근 5년간 김치 공급 추이

단위: 천 톤, %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증감률 (b/a-1)
자가제조	984	1,165	1,223	1,135	1,115	13.3
가구내	871	918	824	816	747	-14.2
외/급식	113	247	399	319	368	225.7
상품김치	637	663	692	690	762	19.6
국내제조(내수)	436	433	441	428	486	11.5
국내제조(수출)	23	24	24	28	30	30.4
수입산	224	253	276	291	306	36.6
총 공급량	1,622	1,828	1,915	1,825	1,877	15.7

자료: 농식품부,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 결과

○ 김치 수출은 최근 5년간 72.0%를 기록할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면역력 향상 식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20년 수출물량은 3만 9,748톤, 수출액은 1억 4,451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김치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홍콩, 대만 등이며, 최근에는 일본의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과 EU 국가의 수출 증가

표 2-21 김치 수출 추이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연도	수출량	수출액	수출단가
2015(a)	23,111	73,543	3.18
2016	23,490	78,900	3.36
2017	24,311	81,393	3.35
2018	28,197	97,456	3.46
2019	29,628	104,992	3.54
2020(b)	39,748	144,511	3.64
증감률(b/a-1)	72.0	96.5	14.3

주) HS코드 : 2005,99,1000(김치)의 값임.

자료: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각년도)

- 김치의 수출 활성화 역할이 주어진 곳은 김치수출협의회인데, 45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정부로부터 물류비와 공동마케팅사업비를 지원받음. 2020년에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아 공동마케팅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음. 다만, 세부 사업이 캐릭터 관리와 홍보 영상 제작 등 단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함.
 - 이러한 사업 문제는 김치 수출협의회 사무국을 한국 농림식품 수출입조합에서 일괄 대행하고 있는 등 상황의 결과

표 2-22 김치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내역 (2020년)

단위: 백만 원

대상국가	사업방법	사업예산
일본	한국김치수입협의회	5
태국 등 6개국	김치캐릭터관리	7
-	캐릭터활용 홍보영상 제작	120
-	총회개최	1
합계		132

자료: 김치수출협의회 내부자료

나. 전통주산업

- 청주, 탁주, 증류식 소주로 구분되는 우리나라 전통주의 생산실적은 2015년 409억 원에서 2019년 531억 원으로 30.0%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주류의 생산실적이 4.5%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최근 건강한 식생활과 웰빙 열풍에 힘입어 막걸리 소비량 등이 증가한 결과로 추정됨.

표 2-23 전통주 생산실적

단위: 백만 원, %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b)	증감률 (b/a-1)
전체 주류	9,361,633	9,296,077	9,243,659	9,039,379	8,941,278	-4.5
전통주 ¹⁾	40,882	39,656	40,029	45,573	53,128	30.0
전통주 비중	0.44	0.43	0.43	0.5	0.59	34.1

주 1) 생산실적상의 '전통주'는 전통주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산정(주세법상의 전통주)

자료: aT, 2020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 전통주 수출액은 2009년까지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 정체기에 들어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9년 1,736만 달러에서 2020년 1,822만 달러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세부 품목 중에는 탁주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일본으로의 탁주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내 한류 열풍과 함께 막걸리 소비량이 증가한 것이 주된 영향

표 2-24 전통주 수출 추이

단위: 톤, 천 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탁주	13,654	12,868	12,904	12,247	12,848	12,410	12,772	12,190	12,556	12,468
약주	283	709	226	662	245	782	224	722	186	648
청주	450	840	356	726	384	795	357	768	291	663
사과주	63	161	163	357	268	547	448	868	983	1,700
기타 과실주	890	3,091	787	2,716	819	2,650	713	2,394	720	2,341
인삼주	58	556	62	564	48	480	43	419	44	404
총합	15,397	18,225	14,496	17,272	14,611	17,664	14,558	17,361	14,780	18,224

주) 법적으로 규정된 전통주 외의 통상적인 전통주류 포함

자료: aT, 2020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원자료: 관세청 수출입현황 통계)

- 김치와 동일하게 전통주도 별도의 수출협의회가 존재하는데, 전통주 수출협의회와 막걸리 수출협의회가 각각 활동을 하고 있음. 전통주 수출협회의 경우 34개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고, 2020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아 공동마케팅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음. 다만, 수출협의회 사무국 담당자가 없어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표 2-25 전통주 수출협회의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현황 (2020년)

단위: 백만 원

지원항목		금액
사업비	○ 중국 박람회 공동관운영	100
	○ 미국 전통주 홍보행사	50
합 계		150

자료: 전통주수출협의회 내부자료

- 막걸리 수출협의회 또한 34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국 운영은 한국 막걸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2020년 기준으로 우수등급을 받아 공동마케팅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음.
 - 한국 막걸리협회가 사무국 운영을 전담하고 있어 공동마케팅 등의 사업 성과가 창출

표 2-26 막걸리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현황 (2020년)

단위: 백만 원

지원항목		금액
사업비	○ 주요(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4개국 SNS활용 홍보 판촉 행사	120
	○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SNS활용 홍보 판촉 행사	30
합 계		150

자료: 막걸리수출협의회 내부자료

2.2.2. 자조금 현황

가. 김치자조금

- 김치자조금은 법적 근거인 「김치산업 진흥법」이 2011년에 제정됨에 따라 2012년에 임의자조금으로 설치되었음.¹² 동법에서는 김치산업 종합 계획 수립, 김치자조금 운영 등을 통한 김치산업 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명기하고 있음.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자조금의 조성 방법,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의 내용 명시¹³

12 김치산업진흥법 제19조(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김치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김치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김치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 2-27 김치산업진흥법과 전통주자조금법 비교

항목	김치자조금	전통주자조금
	임의자조금	임의자조금
상위법	김치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자조금의 적립지원	법 제 19조	법 제 17조의 2
자조금 조성방법	영 제 11조	영 제 4조의 2
보조금의 지급기준	영 제 12조	영 제 4조의 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 ②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만 해당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연간 보조금의 지급한도**는 그 구성원이 생산한 김치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의 생산액을 적용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김치자조금은 (사)대한민국김치협회가 운영하는데, (사)한국김치협회와 (사)세계김치협회가 2012년에 통합된 조직임. (사)대한민국김치협회는 두 개 협회의 통합을 통해 58개 회원사를 확보하였음.¹⁴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치자조금의 경우 정보의 매칭펀드 보조 없이 회원 거출금으로만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부터 정부의 보조를 받아 자조금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음.

나. 전통주자조금

- 전통주 자조금은 김치에 이어 두 번째로 식품자조금 단체로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¹⁵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6월 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임의자조금 형태로 도입되게 되며,¹⁶

14 통합 당시 협회별 회원사는 (사)한국김치협회 34개사, (사)세계김치협회 24개사였음.

1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주 등의 계승·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주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전통주 등 원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사업
6.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0. 6. 9.]

개정된 시행령에는 자조금의 조성 방법, 사용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자조금 거출기준은 주류의 출고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 예정
- 전통주 등¹⁷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 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기금으로 규정

○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전통주자조금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다음, 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전통주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농식품부는 김치와 전통주를 대상으로 식품자조금을 설치한 다음, 관련 자조금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식품자조금 도입을 검토

제4조의3(보조금의 지급 등)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2.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 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17 ‘전통주 등’이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과 전통주에 준하는 우리술(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등 8개 주종)을 의미함.

표 2-28 전통주 등 자조금 관련 조문 개정사항

구분	내 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의 적립지원(법 제17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관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9. 공포, 2020.6.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영 제4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함(제1항) - 조성된 자조금은 전통주 등의 계승·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 전통주 등의 관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함(제2항) ○ 보조금의 지급 등(영 제4조의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단체는 ①자조금 조성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며 자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고, ②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가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야 함(제1항) - 보조금은 자조금 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함(제2항)

자료: 농식품부 보도자료,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2020.06.09.)

제 3 장

식품자조금의 실태 분석

1. 식품자조금의 운영 실태

1.1. 자조금 및 조직 현황

- 김치자조금은 농축산자조금과는 달리 별도의 자조금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 「김치산업 진흥법 19조」에 의거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11조에 자조금의 사용처를 소비촉진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이나 자율수급 조절을 위해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 유통 정보화, 농어업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김치자조금은 2021년 현재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조성된 자조금 5억 원과 정부매칭 펀드 5억 원으로 운영 중임. 김치자조금의 거출 기준은 연 매출액의 1%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데, 2021년 김치자조금의 자조금 조성액 규모는 5억 원에 달함.

표 3-1 식품자조금 조성규모 및 거출기준 (2021년)

단위: 백만 원

구분	자조금명	조성규모	거출기준	비고	출범년도
임의	김치	500	연매출액의 1% 이내	매출액 기준	2012

자료: 김치협회

○ 김치자조금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021년 기준 110개소임. 이 중 기업회원은 89개소인데, 우리나라에서 상시 운영되는 김치제조업체가 539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업체의 16.5%만이 자조금에 참여하고 있어 김치자조금의 김치산업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¹⁸

- 기업회원 중 CJ제일제당, 신세계 조선히텔 김치, 대상, 풀무원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5개소 포함되어 있고, 김치공장을 가진 농협 5개소가 가입

- 그 외의 기업회원으로 중소기업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이 참여

○ 김치자조금 회원 중 개인회원 15명과 특별회원 16명이 포함되어 있어 농축산자조금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이들 회원은 2012년 협회 통합 당시 기준 김치명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인데,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조금 거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 외에 의결권이 없는 특별회원이 있음.

- 개인회원과 특별회원의 경우 자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조금 회원 자격에 대한 문제의 소지 발생

18 2019년 김치제조업편람.

표 3-2 김치자조금 회원 현황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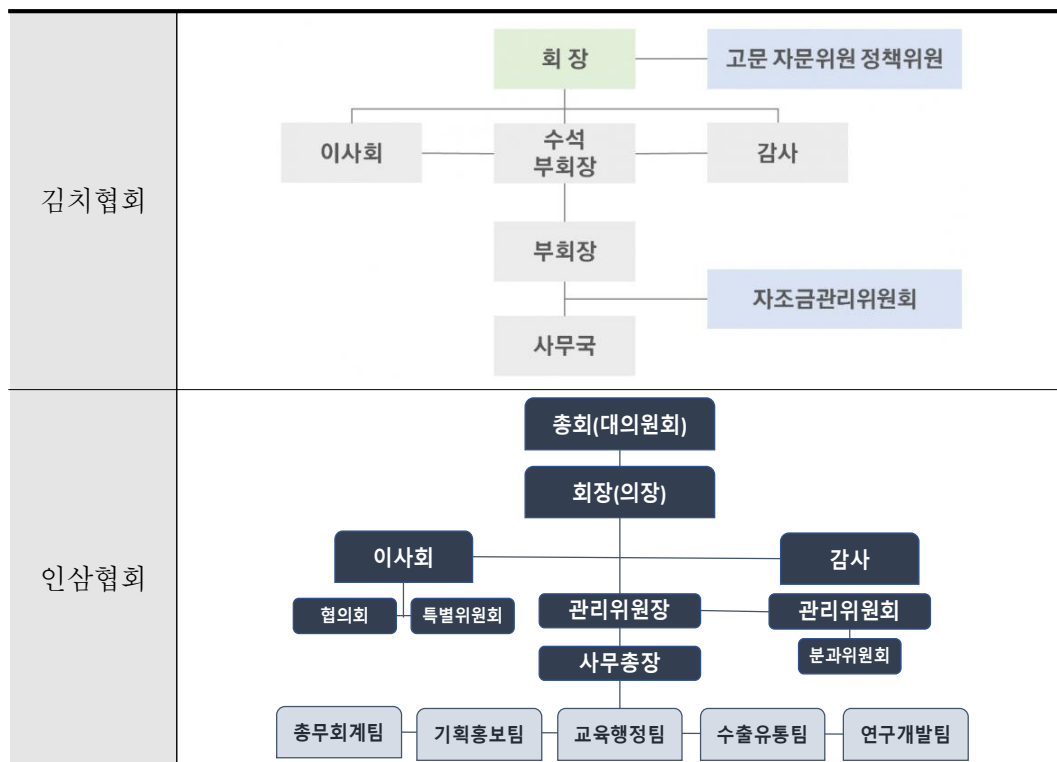
분류		회원수	
기업회원	대기업	2	CJ제일제당, (주)신세계조선포텔 김치
	중견기업	3	(주)대상, (주)풀무원식품, (주)삼진지에프
	중소기업	39	
	농협	5	부귀농협 마이산김치, 회원농협 김치가공공장, 순천농협 남도식품,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 경기농협식품조공
	영농조합법인	5	
	농업회사법인	32	
	기타	3	(사)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 협동조합, (주)푸드윈텍
기업회원 합계		89	
개인회원		15	의결권은 가지나, 2012년 김치협회 통합 때 함께하게 된 김치명인이나 개인사업자
특별회원		16	의결권 없음
합계		110	

자료: 김치협회

○ 김치자조금 사업은 김치협회 사무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김치협회 업무와 자조금 사업 업무가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농축산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관리 및 사업 담당 조직이 일반 단체 조직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치자조금 조직 또한 업무 분리가 필요함.

-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협회 산하에서 운영되는 인삼자조금과 비교했을 때에도 사무국의 분리나 직제 분류 등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나는 상황

그림 3-1 김치협회와 인삼협회 조직도 비교



자료: 김치협회, 인삼협회 홈페이지

1.2. 자조금 사업의 추진 실태

○ 김치자조금은 거출된 자조금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표 3-3>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사업 규모는 2015년 3억 원에서 2021년 1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자조금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21년 기준으로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4억 원)과 소비 촉진 홍보 사업(3.4억 원)으로 농축산자조금의 사업 비중과 유사한 구조

-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 변천 과정을 보면,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소비촉진 홍보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위생 안전 및 품질 검사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는데, 이는 김치가 식품 안전성 및 품질에 민감한 가공식품인 점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 반면에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되다가 2020년부터 중단되었는데, 수출 대상국 현지 방문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한편 최근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도 있는데, 김치 종균 보급사업, 교육 및 정보 제공사업, 연구 용역사업, 자조금 평가사업 등이 해당됨.
 - 자조금 평가사업은 김치자조금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조금 사업예산이 1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된 2021년에 처음 시행

표 3-3 연도별 김치자조금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151	200	250	250	256	250	405
위생 안전/품질 검사	6	12	20	22	24	18	28
소비촉진 홍보	95	129	158	126	95	151	335
해외시장 개척	17	15	23	23	27	0	0
종균 보급	0	0	0	0	6	3	0
교육 및 정보 제공	0	0	0	0	0	9	52
연구용역	0	0	0	30	49	20	20
자조금 평가	0	0	0	0	0	0	10
운영비	42	44	50	50	50	50	150
합계	311	400	500	500	506	500	1,000

주) 모든 자료의 수치는 세부항목과 합계가 반올림(백만원 이하)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자료: 김치협회

가.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김치자조금은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에 전체 자조금 예산의 40% ~ 50%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정도로 노력해왔는데, 주로 김치의 원·부재료 저장유통을 위한 물류비용 지원과 수출을 위한 김치 유통용기의 공동구매 사업에 주력하였음.

- 김치 원부재료 저장유통 물류비용 지원사업은 저장·유통용 상자 및 저장용 팔레트의 임차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
- 김치유통 수출용기 공동구매 사업 또한 수출용 저장·유통용기 및 박스 구매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

표 3-4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김치 원·부재료 저장유통 물류비용지원	102	90	108	86	55	55	295
	배추 등 김치원료 비축지원	0	0	0	0	0	0	70
	계약재배원료 운송비 지원	0	0	0	0	0	0	40
	김치재료 계약사업	0	0	0	84	120	138	0
	김치유통·수출용기 공동구매	49	110	142	80	81	57	0
합계		151	200	250	250	256	250	405

자료: 김치협회

○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산지 김치원료 생산자와 김치업체의 계약재배 물량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김치재료의 계약재배 사업을 실시하여 김치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음.

- 사업비 지원은 회원사별 자조금 납입금액 이내에서만 지원하며, 회원사가 계약재배농가에 자부담 선결제가 확인된 다음 지급
- 세부 사업금액은 회원사의 자조금 납부금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170만 원부터 3천만 원에까지 지원

표 3-5 김치재료 계약재배사업 지원현황 (2020년)

금액	개소수	금액	개소수
3천만 원	1개사	300만 원	3개사
1천만 원	6개사	200만 원	1개사
500만 원	7개사	170만 원	1개사

자료: 김치협회

- 한편, 2021년 자조금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신규로 진행된 사업이 있는데, 김치원료 비축지원사업은 저장 창고를 임차하여 배추, 무 등의 김치 원료를 보관하는 업체의 창고 임차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계약재배 원료 운송비 지원사업은 김치업체의 계약재배 운송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임.

나. 위생 안전/품질 검사

- 위생 안전 및 품질 검사사업은 가공식품인 김치의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6백만 원 ~ 2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한 주요 사업임. 세부사업 중 HACCP 기본/심화 교육사업은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시스템 관련 교육 및 현장 교육 등을 위한 업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가품질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업체의 자가품질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HACCP 기본/심화 교육사업의 프로그램은 HACCP 의무교육, 심층교육, 현장 1:1 맞춤교육, 미생물 등 품질검사로 구성
- 자카품질 검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 기준 23개 업체에 18백만 원을 지원

표 3-6 위생안전/품질검사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위생안전/ 품질검사	HACCP기본/심화교육	6	12	20	22	3	0	28
	자가품질검사 비용지원	0	0	0	0	21	18	
합계		6	12	20	22	24	18	0

자료: 김치협회

다. 소비촉진 홍보사업

○ 김치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김치에 대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소비 홍보, 나눔 행사, 국산김치 표시, 기타사업 등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이중 소비 홍보사업은 국산 김치의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

- 범국민 소비촉진홍보사업은 김치의 우수성, 효능, 식문화적 가치 등을 언론과 SNS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업
- 현안사업 대응 사업은 한국 김치의 종주국 위상 제고 등의 김치 현안사항에 대응하고, 배추 과잉 및 김치소비 위축시 김치판매 촉진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
- 찾아가는 김치 체험교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사업으로 김치명인 및 김치 전문가가 김치 체험교실을 운영

- 김치급식 등 주 타겟형 김치 소비촉진 홍보 사업은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및 월간지에 학교급식에서의 김치 가치 홍보
- 박람회 참가 김치 소비홍보 부스비 지원사업은 2018년 1개 업체 대상으로 50만 원 지원

표 3-7 소비촉진 홍보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비 홍보	범국민 김치 소비 촉진 홍보	0	0	0	22	28	51	60
	김치 현안사업 대응	0	0	0	0	0	0	35
	찾아가는 김치 체험교실	0	15	21	22	30	20	20
	김치급식 등 주 타겟형 김치 소비촉진 홍보	5	4	4	4	4	0	0
	박람회 참가 김치 소비홍보 부스비 지원	0	0	0	1	0	0	0
나눔 행사	이웃과 함께하는 김치나눔 행사	60	98	126	61	0	0	0
	소외계층 지원 및 김치문화 홍보	0	0	0	0	25	0	0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광화문행사	0	0	0	9	0	0	0
국산김치 자율 표시	국산김치 자율표시 사업	20	12	7	7	8	9	170
기타	김치의 날 기념행사	0	0	0	0	0	71	50
	김치사랑 운동본부 활성화 사업	10	0	0	0	0	0	0
합계		95	129	158	126	95	151	335

자료: 김치협회

- 김치의 나눔행사 사업은 김치 나눔을 통해 김치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인데,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시행됨.
 - 이웃과 함께하는 김치나눔행사 사업은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우수한 김치를 폭넓게 제공하여 전통김치의 맛 지키기와 소비 촉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소외계층 지원 및 김치문화 홍보 사업은 이웃과 함께하는 김치나눔 행사와 사업목적은 같으나, 푸드뱅크가 아닌 김치업체 주소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공급하는 사업
 -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광화문행사 사업은 2018년에 어린이 재단과 함께 진행한 사업
- 김지자조금은 출범 초기부터 국산김치의 자율표시 사업을 지속하여 왔는데, 2021년에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음. 이는 중국의 ‘알몸 김치’ 파동으로 인해 중국산 김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지고 외식업체에서의 국산 김치 제공 요구가 증대함에 따른 대응 조치였음.
-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는 식당에 인증표시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대한민국김치협회 등 5개 민간단체로 이뤄진 국산김치 자율표시 위원회가 인증 담당

그림 3-2 국산김치 자율표시 인증



자료: 김치협회

- 김치자조금은 2021년 국산김치에 대한 구매홍보 전용시스템 구축, 국산 자율표시 신청·심사·지정·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정실적 2만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표 3-8 2021년 국산김치자율표시 사업추진 계획

단위: 백만 원

내역	사업비	비고
국산김치 구매홍보 전용 시스템 구축	10.0	
국산김치자율표시 홈페이지 구축 및 웹포스터	26.0	
국산김치자율표시 지정서, 스티커 등	18.5	
국산김치자율표시 현장심사 등	40.0	
지원인력	18.0	20,000원*9개월
발송비	40.5	2,700원*15,000개소
광고 및 홍보	17.0	
합계	170.0	

자료: 김치협회

- 기타 사업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 사업과 김치사랑 운동본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김치의 날 기념행사 사업은 「김치산업진흥법」에서 지정된 김치의 날에 대한 기념행사를 김장 행사 등과 연계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한편, 운동본부 활성화 사업은 2013년 김장문화 유네스코 등재에 맞춰 발족된 김치사랑 운동본부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1천만 원이 투입됨.

라. 해외시장 개척

- 김치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김치회원사와 김치협회, 협력사가 함께 해외 수출시장 현장 견학을 가는 사업임.

- 대상 국가는 베트남, 중국 베이징, 일본, 중국 칭도, 러시아 등

표 3-9 해외시장개척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해외시장 개척	김치 해외시장 개척	17	15	23	23	27	0	0

자료: 김치협회

마. 종균 보급

○ 종균 보급사업은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개발·보급하는 종균(wikim23)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종균 공급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종균 물량 kg당 10만 원을 김치자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3개 업체에 3백만 원 집행

표 3-10 우수종균 보급지원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종균보급	우수종균 보급지원	0	0	0	0	6	3	0

자료: 김치협회

바.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식품관련 학회지원, 김치 정보지 발간, 김치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식품관련 학회지원 사업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와 (사)한국식품영양과 학회의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치 종주국 등 역사성 논란에 대응, 김치제조 기술의 최적화에 대한 학술대회 지원

- 김치 정보지인 「KIMCHI」를 창간하여 김치산업 뉴스, 종사자 인터뷰, 우수업체 탐방 등의 김치산업과 관련한 내용 전달
- 김치 전문가 교육지원사업은 세계김치연구소, 숙명여대 등과 공동으로 15주의 「김치 최고 전문가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김치업체 CEO 및 간부급 종사자, 김치명인 준비자의 전문가과정 수강료 250만원 중 40%를 지원

표 3-11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 및 정보제공	식품관련 학회지원	0	0	0	0	0	0	20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0	0	0	0	0	0	15
	김치정보지 발간	0	0	0	0	0	0	10
	김치전문가 교육지원	0	0	0	0	0	0	7
	김치최고전문과정 운영	0	0	0	0	0	9	0
합계		0	0	0	0	0	9	52

자료: 김치협회

사. 연구용역

- 2018년부터 추진된 연구용역사업은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 등록, 세계김치연구소 기능 확대, 학교급식 김치 표준 마련 등의 연구를 의뢰하여 추진하였음.
-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 등록 연구는 2020년 2월 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김치와 용기 등에 “대한민국김치”등 국가명 지리적 표시 등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김치협회가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로 신청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의뢰

표 3-12 연구용역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구용역	김치 식품 영양성분 모니터링	0	0	0	0	0	0	20
	학교급식 김치 표준마련	0	0	0	0	29	0	0
	세계김치연구소 기능확대	0	0	0	0	20	0	0
	김치 국가명지리적표시 등록	0	0	0	30	0	20	0
합계		0	0	0	30	49	20	48

자료: 김치협회

아. 자조금 평가

○ 자조금 운영평가는 2012년 김치자조금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주기적으로 외부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농축산자조금을 벤치마킹하여 추진되는 사업임.¹⁹

- 농축산자조금은 자체 자조금 평가를 위한 외부 용역사업을 진행하여 객관성 있는 자조금 사업 및 조직 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주기적으로 진행
- 김치자조금은 임의자조금이지만, 농식품부의 매칭펀드 지원을 받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가 필요한 상황

¹⁹ 다만, 본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 지연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변경 예정임.

표 3-13 자조금평가 사업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내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조금평가	자조금 운영평가	0	0	0	0	0	0	10

자료: 김치협회

2. 관련 이슈 및 개선 과제

2.1. 제도 및 시스템

가. 제도적 기반 미흡

- 「김치산업진흥법 19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김치자조금은 농축산자조금과 달리 명확한 상위법이 없는 상태로 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자조금의 조성 방법과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조금 조직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현재 시행령에 의해 협회와 자조금의 회계분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표 3-1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축산자조금법」에는 별도로 자조금 단체의 구성 주체, 자조금 기관, 설치 요건, 거출 한도, 납부 방법, 폐지 요건, 벌칙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 있음. 반면에 김치를 포함한 식품자조금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자조금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의 매칭 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김치자조금의 경우 향후 의무자조금 전환 등을 통한 자조금 시스템 개선을 위해 세부 내용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수적

표 3-14 농축산자조금과 김치자조금의 상위법 비교

항목	농산자조금		축산자조금		김치자조금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임의자조금
상위법	농수산자조금법		축산자조금법		김치산업진흥법 19조
구성주체	① 농업인, ② 농업경영체, ③ 생산자단체, ④ 기타		① 축산물 생산자, ② 가축 사육자,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자조금기관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관리위원회, ④ 사무국, ⑤ 대납기관, ⑥ 수납기관	임의자조금위원회 (15인 이하)	① 대의원회, ② 관리위원회, ③ 사무국, ④ 대납기관, ⑤ 수납기관	임의자조금위원회 (15인 이하)	-
설치요건	존재	존재	존재	존재	-
거출한도	제한있음	제한 없음	제한있음	제한 없음	-
납부방법	대납기관, 수납기관 지정		중도매인, 수납기관 지정		-
폐지요건	존재		존재		-
벌칙	존재		존재		-

나. 자조금 조직 취약

- 김치자조금 거출 및 사업 관리는 (사)대한민국김치협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임의자조금 조직으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음. 특히, 김치협회 사무국이 협회 업무와 자조금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업 분리를 통한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임.
 - 김치협회의 실무 조직이 3명(전무1, 과장1, 대리1)에 불과하여 자조금 거출 및 사업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
 - 김치자조금에 대한 김치협회의 회계 관리는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제 12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김치협회 내부 자조금 관리규정²⁰에도 자조금이 타 회계와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20 김치협회 내부 자조금 관리규정 제7조(김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① 김치자조금은 김치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고, 김치자조금관리단이 실무를 담당한다.
- ② 김치자조금관리단은 당해연도 김치자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김치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업부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김치자조금 사업계획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김치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김치자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3. 김치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
 4. 김치자조금의 시용액 및 사용내역
 5. 최근년도 협회 회원이 출하한 실적(금액), 자조금 납입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③ 김치자조금관리위원회는 김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계좌)를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김치자조금은 김치협회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한 자체조성액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교부받되, 사업취소 등으로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완료 후 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도 보조금 잔액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자조금 예산의 분리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김치협회 정관²¹에는 김치 협회 재정이 자조금이라고 명시되어 혼선 가능성 잔존

- 나아가 김치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여 보다 본격적인 자조금 거출 및 사업추진을 진행해나가야 하는데, 현재의 체계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다. 외부 법과의 충돌 가능성 제기

- 자조금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거래 교섭력이 취약한 생산자가 재원을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그 중 수급조절을 통한 생산자 소득 유지를 위한 사업도 해당됨.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공급자의 단합을 통한 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을 수 있는 점임.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위가 가금산업에 대해 내린 부당행위 처분인데, 김치자조금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축산자조금의 경우 「축산계열화 사업에 대한 법률 제5조」에서 수급 조절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정위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

④ 김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김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21 김치협회 정관 제43조 (재정)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2. 출연금, 기부금, 찬조금, 분담금, 정부 등으로부터의 보조금 등
3. 용역사업수입, 위탁사업수입, 공동사업수익 등

4. 자조금

5. 기타 수입

- 김치산업은 계열화가 95%에 도달하고 있는 육계산업과는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김치자조금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 중 대기업 비율은 2.2%, 중견기업의 비율은 3.4%에 불과하여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김치 공급자의 담합 행위로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대응 논리 개발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함.

2.2. 자조금 거출

가. 자조금 참여회원 부족

- 김치자조금 회원수는 2021년 기준 110개소인데,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 등을 제외한 기업회원은 89개소로 집계됨. 우리나라 김치제조업체가 539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김치자조금 회원업체가 전체 김치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에 그치고 있어 김치자조금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추가로 개인회원과 특별회원의 경우 김치제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자조금 회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자조금의 참여회원 수 확대는 현행 임의자조금 단체를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자조금 거출 규모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김치협회만으로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지난한 상황임.

나. 자조금 거출 실적 미흡

- 2012년부터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김치자조금은 연매출의

1% 이내로 자조금을 거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수 회원사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2021년의 경우 회원사들로부터 5억 원의 거출금이 조성되었는데, 이는 전체 89개 기업회원 중 28개 회원사가 납부하여 조성된 것으로 전체 회원(110개소)의 25.5%가 자조금 거출에 참여한 결과
 - 대부분의 거출금 또한 자조금 사업의 수혜 업체가 자조금 지원을 받을 금액을 자조금으로 납부하여 다시 환급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수혜 사업에 관계없이 자조금을 납부하는 기본 원칙과 괴리
- 김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경우, 회원사의 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되어 자조금 거출 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회원사의 거센 반발을 받아 자조금 조직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닭고기자조금에서 발생하였는데, 2009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닭고기자조금이 미납 자조금 청구 소송으로 인한 내부 반발로 자조금 조직이 와해될 뻔한 위기까지 갔었음.
- 선부른 의무자조금 전환에 앞서 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하여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열성 회원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
- 추가적으로 김치 의무자조금 전환 시에는 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원사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함. 또한, 농축산자조금과는 달리 김치와 같은 식품은 한 번에 자조금이 공제될 수 있는 수납기관이 없어 거출기준 및 거출방법 설정에 대한 사전 준비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2.3. 자조금 사업

가. 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사업 전략 미흡

- 김치자조금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수급안정과 소비촉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체적인 중장기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농축산자조금 또한 사업 관리에 용이한 소비 확대 등의 사업에 편중된 사업 전략을 지속하고 있지만, 김치자조금이 농축산자조금의 문제점을 따라갈 이유는 없는 상황
 - 특히, 김치라는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김치산업의 발전에 기본 목적을 가진 김치자조금의 경우 농축산자조금과 차별화된 중장기 사업 계획 마련 필요
 - 세계김치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사업, 각종 행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 검토 중요
 - 김치의 해외수출 촉진 사업을 김치자조금이 아닌 김치수출협회가 주도 하고 있는 부분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

나. 사업 관리 역량 부족

- 소수의 인원들이 김치협회 업무와 김치자조금 사업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 및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관련 기관과의 협업도 시도되고 있으나,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에 한계를 가짐.

- 현안 대응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세계김치연구소와 관련 학회와의 협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관리조직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
- 자조금 관리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자조금 예산 규모와 조직 구조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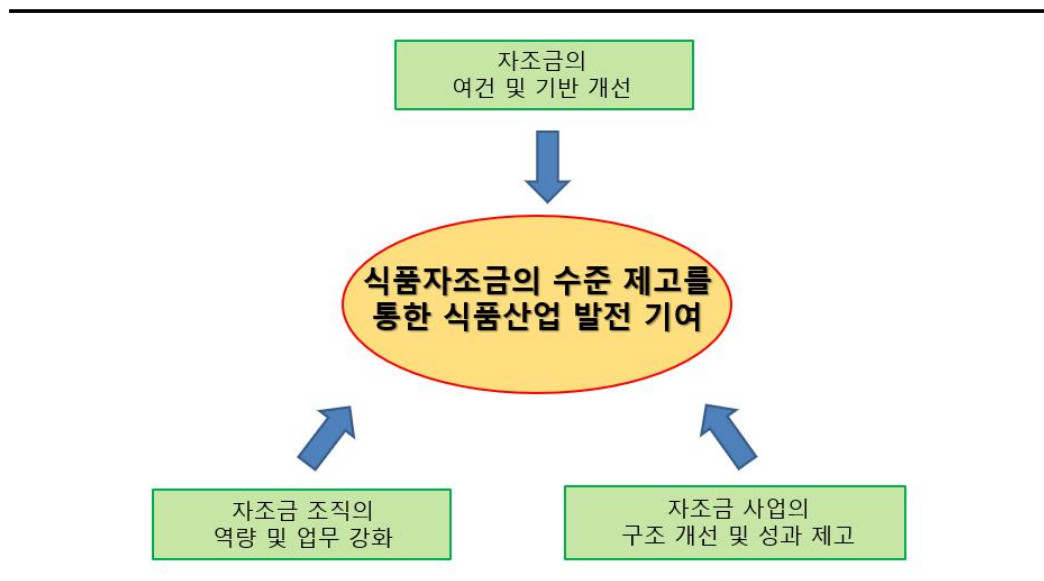
제 4 장

식품자조금의 운영·관리 방안

1. 기본 방향

- 우리나라 식품자조금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선 방향이 <그림 4-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는데, 식품자조금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조금의 여건 및 기반을 개선하고, 자조금 조직의 역량과 업무를 강화하며, 자조금 사업의 구조와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식품자조금은 법적인 기반과 운영체계 등이 농산 또는 축산자조금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고, 자조금 회원과 거출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식품자조금의 최종 목표인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김치자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사)대한민국김치협회 조직의 일부가 병행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를 가지고, 자조금의 양적·질적 성장을 자조금 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끌어내기에 어려운 상황
 - 자조금 설치 이후 지속적인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여 자조금 회원들의 현안 대응에 급급하고 회원 업체들의 자조금 참여 의지를 높이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 유지

그림 4-1 식품자조금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2. 부문별 세부 개선 방안

2.1. 식품자조금의 여건 및 기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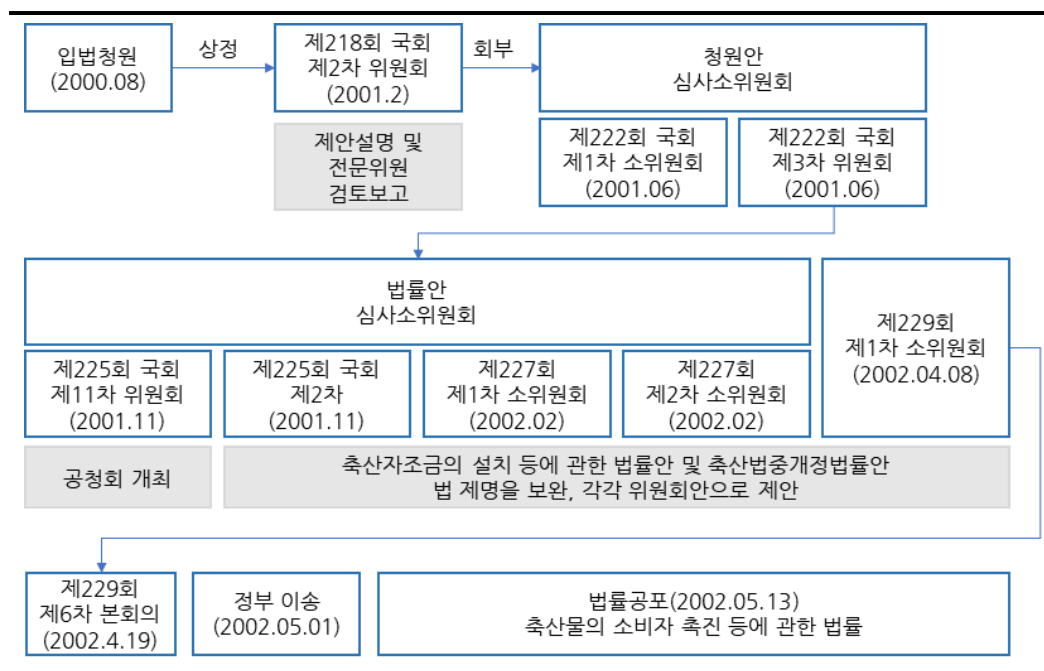
2.1.1. 법적인 기반 강화

가. 축산 및 농수산물자조금법의 제정 검토

- 2002년 제정된 「축산자조금법」은 축산업계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짐.

- 「축산자조금법」 제정 작업은 2000년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된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입법 청원으로 시작되었음.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002년 법이 공포되어 효력을 가짐.
 - 2000년 8월 입법 청원 이후, 제218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청원안이 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청원안 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22회 국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안 내용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축산자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 법의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축산법중 개정법률안을 별도 마련
 - 제222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안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成案)한 양 법률안을 첨부하여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
 - 제225회 국회 제11차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제225회 국회 제2차, 제227회 제1차, 제2차 소위원회 및 제229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축산자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축산법중 개정법률안을 법제명 등 보완 후 위원회안으로 제안
 - 제229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당초 청원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 제229회 국회 제6차 본회의 원안가결을 통해 2002년 4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5월 공포

그림 4-2 축산자조금법 제정 추진 경과



- 「축산자조금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총 9차례에 의해 일부개정, 타법개정 및 전부개정을 통해 현실 반영을 위한 보완이 진행되었음.
 - 2007년 12월 법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제명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거출금의 종류를 구분하는 한편, 대의원의 결원시 보궐선거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회의의결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 2010년 2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통해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 도입

- 2020년 2월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

표 4-1 「축산자조금법」 제정 및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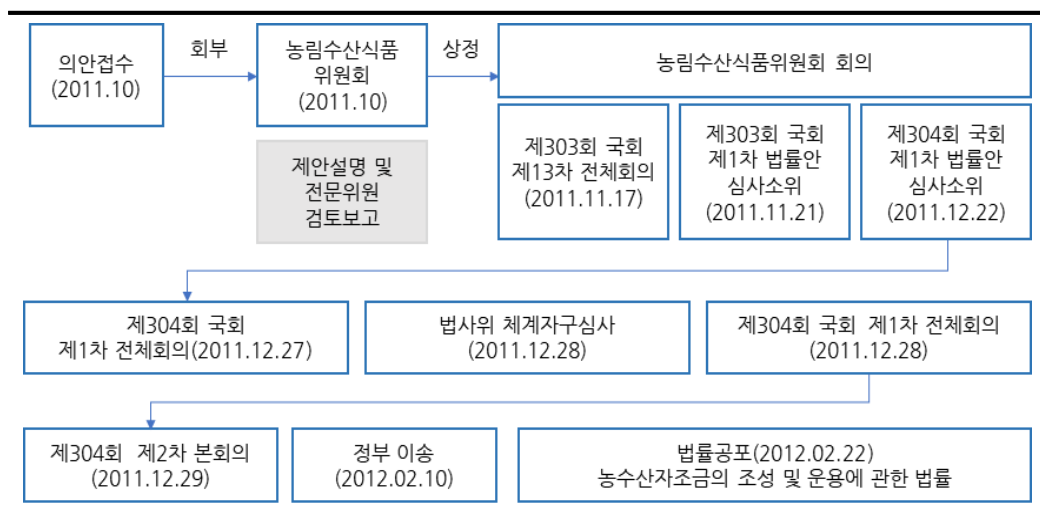
구분	제·개정 현황	주요내용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2.05.13 시행: 2002.1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 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12.28. 시행: 2007.0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명 변경 거출금의 구분 및 조성 변경 대의원회 결원시 보궐선거 근거 마련 대의원회 역할 명시
	타법개정: 2008.02.29. 시행: 2008.0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법 개정(농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
	타법개정: 2010.05.25. 시행: 2010.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전부개정: 2010.02.04. 시행: 2011.0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 재원조성 대상 확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개선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
	일부개정: 2011.11.14., 시행: 2012.0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타법개정: 2013.03.23. 시행: 2013.0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법 개정(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일부개정: 2012.10.22. 시행: 2013.0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
	타법개정: 2014.12.31. 시행: 201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일부개정: 2020.02.11. 시행: 2020.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농수산물자조금법」은 농수산물 의무자조금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 농수산물자조금이 체계적 조성 운용기반을 마련하고자 2013년에 제정됨.

- 2011년 10월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의안(의안번호 1813546)이 접수
- 2011년 10월 농림수산물위원회회를 통해 위원회 의결안이 마련되었으며, 제303회 국회 제13차 전체회의(2011.11.17) 및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11.21) 개최, 304회 국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12.22.), 제304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2011.12.27.)를 통해 법률안 수정 가결
- 2011년 12월 27일 법사위 체계 자구 검토를 거쳐, 제304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법률안 수정 가결
- 제304회 제2차 본회의(2011.12.29.)를 통해 법률 상정 및 의결되었으며, 2012년 2월 10일 정부 이송 및 2월 22일 법률 공포

그림 4-3 「농수산물자조금법」 제정 추진 경과



- 「농수산물자조금법」은 2012년 제정 이후 7차례에 의해 일부개정, 타법개정이 추진되었음.
 - 2018년 개정 내용은 의무자조금을 설치·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농수산물이 저조함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 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의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사항
 - 2020년 개정 내용은 의무자조금 단체와 임의자조금 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 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6조 1항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농수산업자들도 의무자조금 단체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
 - 또한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자조금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표 4-2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및 개정 현황

구분	제·개정 현황	주요내용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12.02.12. 시행: 2013.0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조성·운영·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
	타법개정: 2013.03.23. 시행: 2013.0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일부개정: 2014.10.15. 시행: 2014.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단체의 사업운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 지정 취소시 청문 거치도록 함
	일부개정: 2014.10.15. 시행: 2015.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업자의 경영상·영업상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업하지 못하도록 함
	타법개정: 2015.06.22. 시행: 2015.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일부개정: 2017.10.31. 시행: 2018.0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 제공 근거 마련 •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생산 및 유통 자율수급관리 사항 반영
	일부개정: 2020.05.19. 시행: 2020.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자조금으로 가입해야 하는 농수산업자의 범위 및 의무자조금 단체 개념 명확화 •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 •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자조금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타법개정: 2020.12.08. 시행: 2020.1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나. 식품자조금법 제정 의의 및 필요성

- FTA 이후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식품 또는 전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자조금을 통한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의 요구가 높음.
- 식품자조금은 2012년 김치자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전통주자조금이 도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김치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축산물 및 농수산물 자조금에 비해 자조금의 조성·운영·평가 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임.
- 또한 축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과정, 유통구조, 소비행태가 다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자조금에 대한 조성·운영·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다. 식품자조금법의 제정 방안

- 앞서 제시된 「축산자조금법」 및 「농수산자조금법」의 법제정 추진 경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정 방식에 따른 소요 기간과 제정 난이도 등에서 차이가 남.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제정 추진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축산자조금은 입법청원 후 1년 10개월, 농수산자조금은 의안접수 후 7개월 후에 법률 공포
- (가칭)식품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자조금법”) 제정에 앞서 현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김치협회, 전통주협회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전통식품 관련된 한국장류협동조합, 전통식품협회,

쌀가공식품협회 등과 연계한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주요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을 통한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식품자조금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및 필요성 확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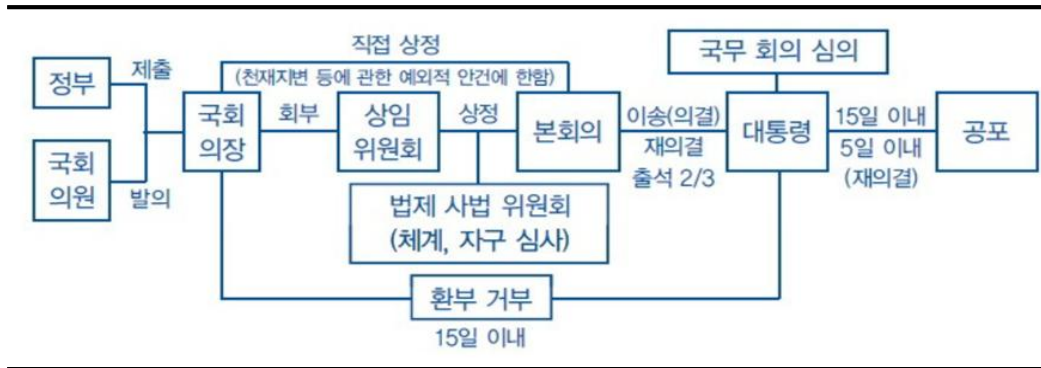
○ 식품자조금법(안) 마련을 통해 사전에 정부입법계획에 의한 법제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전문연구기관과 협의를 통해 식품자조금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 및 현행법 등과의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정밀 검토 필요
- 식품자조금법 정부입법(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법률안 처리안 절차에 의거하여 법률 제정 추진

표 4-3 입법 단계별 절차 및 소요기간

정부입법안	소요기간	국회의원발의안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국회의원 법률(안) 마련 발기인 모집 등 소요기간 일정하지 않음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사전 영향평가	약 15 ~ 30일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국무회의 상정
공포	약 3 ~ 4일	공포

그림 4-4 법률안 처리 과정 및 단계별 절차



라. 식품자조금법의 주요 내용

- 식품자조금법 제정 시 검토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축산자조금법」과 「농수산물자조금법」의 내용들을 분석하였음. 구체적인 비교 결과는 <표 4-4>와 같은데, 이를 통해 식품자조금법의 항목별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음.²²
 - 기본적으로 「축산자조금법」과 「농수산물자조금법」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벤치마킹하였으나, 일부 사항은 식품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
- 식품자조금법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정의와 범위, 자조금 설치 및 조성·운영, 평가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됨.

²²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고할 것.

표 4-4 축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법 및 식품자조금법 제정안 비교

축산자조금법	농수산자조금법	식품자조금법 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식품, 식품산업, 식품사업자, 전통식품에 대한 정의 삽입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제3조(자조금의 설치)	제3조(식품자조금의 설치)	식품의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운영 가능
제4조(자조금의 용도)	제4조(자조금의 용도)	제4조(자조금의 용도)	식품자조금 용도 명확화
	제5조(출연 및 지원)	제5조(출연 및 지원)	정부 출연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명시
제2장 의무자조금	제2장 의무자조금	제2장 의무자조금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한도를 0.5% 내로 하되, 식품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 (축산 0.5%, 농수산 1% 이내)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제8조(의무거출금의 한도)	제8조(의무거출금의 한도)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제9조(총회의 설치 등)	제9조(총회의 설치 등)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제10조(총회의 운영)	제10조(총회의 운영)	

축산자조금법	농수산물자조금법	식품자조금법 제정안	비고
제13조(대의원회의 직부)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2조(대의원회)	제12조(대의원회)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5조(위원장의 해임)	제15조(위원장의 해임)	
제16조(관리위원회 직부)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조(의무거출금의 수납의 위탁)	제20조(의무거출금의 수납의 위탁)	제20조(의무거출금의 수납의 위탁)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1조의 1(생산유통 자율조절) 삭제
제3장 임의자조금	제3장 임의자조금	제3장 임의자조금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식품업체의 서명→장관 승인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 설치)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 설치)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 설치)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8조(관련 통계)	제28조(관련 통계)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및 제공

축산자조금법	농수산물자조금법	식품자조금법 제정안	비고
	제29조(과오납의 환급)	제29조(과오납의 환급)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자조금 운용평가)	제31조(자조금 운용평가)	
	제32조(지도·감독)	제32조(지도·감독)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4조(벌칙)	통계 제공관련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벌칙
제33조(벌칙)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제35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축산 : 조성 운용에 관한 공무의무 위반시 과태료 농수산물 : 납부안내 공시 위반시 과태료

(ㄱ) 정의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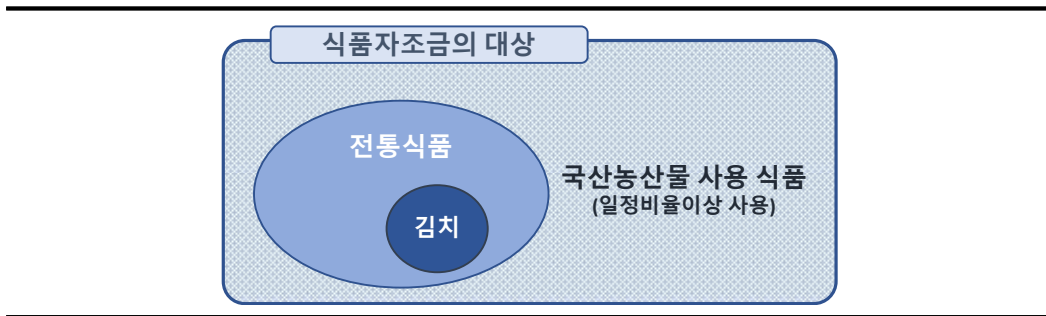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²³ 또는 국산 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의무식품자조금 또는 임의식품자조금 중 하나의 식품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식품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인 식품자조금의 대상 품목으로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 자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김치를

²³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농식품부 고시 제2021-17호, 2021.5.10.)을 참고할 것.

포함하는 전통식품까지 범위를 설정하거나, 전통식품을 포함하여 국산 농산물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음.

- 전통식품의 정의로는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인데, 24개 품목을 명시²⁴
- 추가적인 기준으로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CR)²⁵를 통해 업체들의 규모화 수준도 대상 품목 결정에 참고 가능

그림 4-5 식품자조금의 대상 및 범위



(L) 의무자조금 설치 및 조성·운영

- 자조금 단체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식품의 식품사업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²⁴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참고할 것.

²⁵ 시장집중도(CR)는 매출 상위 기업의 매출액 합이 해당 시장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측하는 지표로 특정시장 또는 산업에서 경쟁의 제한 또는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음.

-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식품의 평균 판매액(또는 판매량)의 1000분의 5이내²⁶로 하고 대의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의무자조금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조금 단체에 총회를 두어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 수가 150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같음하도록 함. 또한, 의무자조금 단체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자조금 거출과 관련하여, 자조금 회원인 식품사업자는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직접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에서 지정한 대납기관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을 수납하고, 직접 수납할 수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납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의 폐지 관련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회원인 식품사업자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폐지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폐지 명령에 의하여 폐지되도록 함.

(ㄷ) 임의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

- 자조금 단체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식품사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²⁶ 자세한 거출기준 및 방법은 뒷부분을 참고할 것.

- 임의자조금 단체에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두고 임의자조금의 폐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임의자조금 단체가 자조금을 운용·관리하게 함.
 - 임의자조금은 해당 식품사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폐지

(ㄹ) 평가 및 벌칙

- 자조금 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식품사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12.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체계 정립

가. 자조금의 조성 방안

(ㄱ) 거출목 설정

- 자조금 거출 대상의 확정을 위해서는 식품 제조업체의 정확한 개소수와 매출 등의 실적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공식 자료로 식품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매년 실적을 등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실적보고 데이터(raw-data)를 식품자조금 단체가 활용하도록 함.²⁷

²⁷ 현재 김치업체들은 법적으로 매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보고’를 통해 생산량, 생산액, 판매수량 등의 생산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구체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보고의 내용은 부록 3을 참고할 것.

-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되는 광업제조업조사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함에 따라 10인 미만의 사업체수 및 판매액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내포
 - 농식품부에서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보유한 김치류 제조업체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로 전수 자료가 아닌 한계
- 식품자조금의 조성 확대를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체의 참여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해당 식품제조업체의 50%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식품자조금 단체에서는 회원 수 확대를 위해 자조금의 사업계획 수립 시 자조금 이해를 위한 지역 또는 권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여 자조금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도록 유도
 - 식품자조금 단체의 사업 초기에는 일정규모 이상(종업수 10인 이상)의 식품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회원 수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 김치의 경우 10인 이상의 김치류 제조업체 229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²⁸ 이후 단계적으로 김치류 제조업체 전체로 확대

(L) 거출금 한도

- 식품자조금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를 마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조금이 조성되도록 해야 하는데, 농축산자조금 및 네덜란드 자조금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식품의 평균 판매액(또는 판매량)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고 대의원회에서

²⁸ 2019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하도록 함.

- 「축산자조금법 제7조」 (의무거출금의 한도)에 의하면,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규정
- 「농수산업자조금법 제8조」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에 의하면,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규정
- 네덜란드의 자조금 부과율은 총매출액의 0.06% ~ 0.61%로 운영

표 4-5 농축산자조금 및 네덜란드 자조금의 거출 한도 비교

구분		주요내용
국내	축산 자조금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규정
	농수산 자조금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규정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부과율은 총 매출액의 0.06% ~ 0.61%로 운영

○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식품자조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 의해 식품제조업체의 판매액 또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를 설정하고, 자조금 거출금의 상한액(최소 1백만 원)과 하한액(최대 10백만 원)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제조업체의 판매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판매액 기준으로 거출금을 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데 반해, 판매가격 변동에 의한 거출금 변동 가능성 존재
- 판매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몰량 기준으로 판매가격 대비 변동성이 적으나, 판매 형태에 따라 판매량 기준 설정에 어려움 발생

표 4-6 자조금 거출기준에 따른 장단점

구분	판매액	판매량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액 기준에 따라 거출금 산정이 쉬움 B2C에서 대기업 비중이 커서 자조금 확대 수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량 기준(절대값)으로 금액 대비 따른 변동성이 적음 타 자조금 “물량(物量)” 개념으로 거출기준 설정(ex. 재배면적, 봉지 등)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가격 변동 가능성 존재 대기업 비중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형태(B2B, B2C)에 따른 판매량 기준설정 어려움

○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배추김치와 기타김치)에 근거하여 김치자조금 조성 규모를 추정하여 보면, 판매액의 0.1% 적용 시에는 26억 원으로 예상되고, 0.5% 적용 시 130억 원까지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판매량을 기준으로 B2B와 B2C를 구분하여 kg당 판매가격의 0.1% ~ 0.5% 적용하여 kg 당 거출액을 산정하면, 김치자조금 조성규모는 32억 원에서 163억 원까지 추정

- 구체적인 추정 근거 및 결과는 다음 <표 4-7> ~ <표 4-10>에 제시된 내용 참고

표 4-7 2017년 배추김치 및 기타김치 매출현황

(단위 : 톤, 천 원, 달러)

구분	국내 판매량	국내판매액	수출량	수출액
합계	416,517	1,218,319,720	23,032	80,091,729
배추김치	310,352	843,153,004	21,690	74,602,044
기타김치	106,165	375,166,716	1,342	5,489,68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8)

표 4-8 김치 제조업체 대상 판매액 기준 거출금 및 자조금 조성규모(추정)
(단위 : 천 원)

구분	1안	2안	3안	4안	5안
판매액 기준	0.1%	0.2%	0.3%	0.4%	0.5%
거출금 조성액	1,308,872	2,617,744	3,926,617	5,235,489	6,544,361
정부 50% 매칭시 자조금 조성규모	2,617,744	5,235,489	7,853,233	10,470,978	13,088,722

표 4-9 김치 제조업체 대상 판매량 기준 거출금 및 자조금 조성규모(추정)
(단위 : 원, 천 원)

구분	1안	2안	3안	4안	5안
판매량 기준	0.1%	0.2%	0.3%	0.4%	0.5%
B2B kg당 거출액	2.98원	5.96원	8.93원	11.91원	14.89원
거출금 조성액(a)	916,211	1,832,421	2,748,632	3,664,842	4,581,053
B2C kg당 거출액	5.41원	10.83원	16.24원	21.66원	27.07원
거출금 조성액(b)	713,995	1,427,991	2,141,986	2,855,981	3,569,976
거출금조성액(a+b)	1,630,206	3,260,412	4,890,617	6,520,823	8,151,029
정부 50% 매칭시 자조금 조성규모	3,260,412	6,520,823	9,781,235	13,041,647	16,302,058

주) 김치류 판매액 중 B2B(70%) : B2C(30%) 적용하여 산정함

표 4-10 배추김치 판매량 상위 36개 상품 분석 결과(쿠팡 기준)

(단위 : 원)

구분	판매가	100g당 가격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 1.8kg, 1개	13,620	757
종가집 포기김치, 4kg, 1개	29,660	742
종가집 썰어담은 맛김치, 1.7kg, 1봉	13,520	795
곰곰 배추 김치, 10kg, 1개	17,240	172
곰곰 국내산 썰은 배추 김치, 1kg, 1개	8,170	817
CJ제일제당 비비고 더풍부한 맛 썰은배추김치, 900g, 1개	8,860	984
곰곰 썰은 배추김치, 10kg, 1개	17,240	172
CJ제일제당 비비고 더풍부한 맛 썰은배추김치 용기, 500g, 1개	6,290	1,258
종가집 전라도 포기김치, 3.3kg, 1개	23,080	699
종가집 현명한 주부의 포기김치, 10kg, 1개	45,900	459
종가집 우리땅 배추김치 태백, 10kg, 1개	42,800	428
빅마마 이해정의 맛있는 포기 김치 11Kg	43,030	391
곰곰 국내산 썰은 배추 김치, 1.8kg, 1개	12,310	684
늘해랑 전라도 배추김치, 10kg, 1박스	31,910	319
곰곰 국내산 포기 김치(냉장), 4kg, 1개	25,850	646
바로푸드 친정김치 배추김치, 친정 배추김치 10kg, 1개	30,910	309
곰곰 국내산 포기 김치 (냉장), 4.9kg, 1개	24,190	494
[입점특가] 100% 국산 전라도 포기배추김치, 3kg, 1팩	16,910	564
올바른빛깔 프리미엄 김치, 1박스, 10kg	17,500	175
헤드림 생포기김치 10kg, 1개	13,900	139
곰곰 국내산 포기 김치 (냉장), 2kg, 1개	14,230	712
해담채 포기김치, 5kg, 1개	21,520	430
김수미 엄마생각 포기김치, 5kg, 1개	34,000	680
원해원 포기김치, 3kg, 1개	14,000	467
올바른빛깔 프리미엄 김치, 1박스, 5kg	12,400	248
맘속김치 100%국내산 김장김치 배추김치, 1개, 10kg	39,900	399
늘해랑 전라도 배추김치, 5kg, 1박스	19,900	398
김수미 엄마생각 포기김치, 2kg, 1개	18,000	900
전라도해풍포기김치5kg 10kg, 일반10kg, 1박스	35,900	359
종가집 포기양념, 2.5kg, 1개	19,870	795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포기김치, 3kg, 1개	20,850	695
곰곰 전라도식 포기김치 (냉장), 3.3kg, 1개	20,230	613
100% 국산 전라도 포기배추김치, 5kg, 1팩	27,930	559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배추 포기김치7kg+총각김치3kg	43,800	438
신선에 배추김치, 5kg, 1박스	11,900	238
종가집 현명한주부의 포기김치, 5kg, 1개	27,900	558
평균단가		541

자료 : 쿠팡(www.coupang.com). 2021.01.20. 기준 검색 결과

-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회원사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차등 구간을 설정하고, 하한액 1백만 원, 상한액 10백만 원으로 설정하여 판매액의 0.1%를 기준으로 자조금의 조성 규모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약 23억 원의 자조금이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됨.

표 4-11 회원사 대상 판매액 기준 구간설정을 통한 자조금 조성 규모(추정)
(단위 : 천 원)

업체별 구간 (판매액기준)	회원수	판매액의 0.1% 적용			비고
		업체당 거출기준	자조금 거출액	정부 50% 매칭시 자조금조성규모	
10억 이하	244	1,000	244,000	488,000	하한액 설정
10~30억 이하	89	2,000	178,000	356,000	
30~100억 이하	67	6,500	435,500	871,000	
100억 초과	30	10,000	300,000	600,000	상한액 설정
합계			1,157,500	2,315,000	

주) 농식품부. 김치산업실태조사(2019) 따른 회원수 및 판매액 기준 적용하여 산정

- 자조금의 실질적인 거출은 식품자조금 단체가 산정된 거출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서를 받은 회원사가 발부된 고지서 등으로 현금 또는 전자결제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거출목은 매년 1월에 식품제조업체에서 등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 실적보고 원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용
 -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납부일자 등을 결정하고, 거출금 납부 안내서 발송 또는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자조금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식품제조업체에게 안내
 -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 가능

- 회원사의 자조금 조성 등을 위한 협력 촉진을 위해 식품자조금 단체가 기부금단체로 등록하여, 자조금 거출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는 회원사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례로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단체인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을 통한 공익목적사업 수행

표 4-12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수익현황(2020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소계	3,743,353,254	
	기부금품	11,472,789	
	보조금	3,447,363,369	
	회비수익	5,000,000	
	기타	279,517,096	
사업외 수익		0	
총계		3,743,353,254	

자료 : 1365 기부포털(nanumkorea.go.k). 공시정보

표 4-13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익목적사업

구분	공익목적사업 현황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소비·수출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 5. 친환경농산업 관련 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6. 친환경농산업 발전을 위한 R&D에 관한 사업 7.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농수산자조금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에 따름 8. 중앙행정기관이 위탁한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자료 : 1365 기부포털(nanumkorea.go.k). 공시정보

표 4-14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익목적사업의 실적

(단위 : 원)

구분	사업내용	비용
친환경 농산물 판촉지원 사업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중단 피해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시장에서의 가격 접근성을 낮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번가, 행복중심생협, 한살림, 롯데슈퍼, 두레생협연합회 단체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20% 할인행사 진행) 	299,419,000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친환경농업 상황과 친환경농가의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 • 친환경농업 가치와 철학, 인증관리 과목에 대해 공동교재를 활용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보충 • 해당 지자체 및 지역 협회와 협조를 통해 교육 운영 	329,944,369
친환경 농산물 판촉지원 사업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중단 피해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산물 가격할인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접근성과 소비 활성화 유도 	2,798,000,000

자료 : 1365 기부포털(nanumkorea.go.k). 공시정보

나. 자조금의 관리 체계

(ㄱ) 자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²⁹

- 식품자조금 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²⁹ 식품자조금 단체의 표준 운영 정관과 식품자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은 4, 5를 참고할 것

-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과반수를 선출하고, 그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비자단체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다만, 이후 자조금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어 회원 수가 15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통해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선출)

표 4-15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안)

구분	인원	구성	비고
선출직	과반수	총회에서 선출된 회원(대의원회에서 선출된 회원)	
지명직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
		식품자조금 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	
		김치산업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소비자단체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합계	11 ~ 21명		

- 자조금관리위원의 선출은 부문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식품제조업체를 시도별로 구분하여 지역별 대표성을 반영하고 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4-6 식품자조금의 관리위원 배분 공식 예

$$\begin{aligned}
 \text{선출구역별대의원수} &= \left(\frac{\text{선출구역내의 김치업체수}}{\text{김치업체수전체}} \times \text{대의원 총수} \times 0.5 \right) \\
 &+ \left(\frac{\text{선출구역내의 김치업체 판매액}}{\text{김치업체 총 판매액}} \times \text{해당 농수산물 대의원 총수} \times 0.5 \right)
 \end{aligned}$$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자조금 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법 제16조), 자조금 거출금의 수납, 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 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총회(대의원회) 보고, 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등이 해당됨.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음.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자조금 사무국 설치 가능(법 제18조제1항)
 -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법 제18조제2항)

(L) 자조금 운용 및 관리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함.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
 - 자조금 사업의 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
 -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

-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
- 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자조금의 용도 및 계정과목의 명확화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의 소비촉진 홍보
 - 식품사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식품 원부재료의 자율적 수급관리,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식품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 식품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 식품자조금 단체 가입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4-16 자조금사업 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

관	항	목	세목
○○○ 자조금 사업비	01 소비홍보	0110 광고	세부사업명
		0120 소비촉진	세부사업명
	02 원부재료 수급관리	0210 원부재료 수급조절	세부사업명

관	항	목	세목
		0220 원부재료 가격안정	세부사업명
		0230 원부재료 수급안정 예비비	
	03 유통구조개선	0310 물류개선	세부사업명
		0320 포장재개선	세부사업명
		0330 유통개선	세부사업명
		0340 유통협력	세부사업명
		0350 소비자협력	세부사업명
	04 경쟁력제고	0410 품질향상	세부사업명
		0420 생산성 시스템	세부사업명
		0430 식품안전	세부사업명
	05 수출활성화	0510 수출마케팅지원	세부사업명
		0520 전문가·바이어초청	세부사업명
		0530 해외시장개척	세부사업명
		0540 수출물류지원	세부사업명
	06 교육 및 정보제공	0610 거출홍보	세부사업명
		0620 교육	세부사업명
		0630 정보제공	세부사업명
		0640 선진지견학·해외연수	세부사업명
	07 조사연구	0710 조사·연구용역	세부사업명
		0720 연구회	세부사업명
		0730 성과평가	세부사업명
	08 선거	0810 총회 의장·부의장·감사 등의 선출	세부사업명
		0820 대의원의 선출	세부사업명
	09 수납위탁 수수료	0910 수납기관 수수료	세부사업명
	10 운영관리	1010 인건비	세부사업명
		1020 경비	세부사업명
		1030 자산취득비	세부사업명
	11 예비비	1110 예비비(목적기금 : 공공부조)	

(㉔) 자조금 운용의 공시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고 5년 이상 보관

(㉕) 자조금 운용비용

○ 식품자조금 단체의 운영비용은 <표 4-17>에서 제시된 항목과 내용에 근거하여 집행이 가능함.

표 4-17 식품자조금 단체 운용비용의 범위

항	목	세목	세부내용
운영 관리	인건비	급여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
		제수당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
		법정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포함)의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
		일용직임금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
	경비	회의비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복리후생비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기타경비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자산취득비		비품구입, 보증금 등

- 다만 자조금 운용 비용은 자조금 조성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조금의 해당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사용한 자조금(이하 “자조금 사용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 자조금 사용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 원 초과 불가)

(㉑) 자조금 운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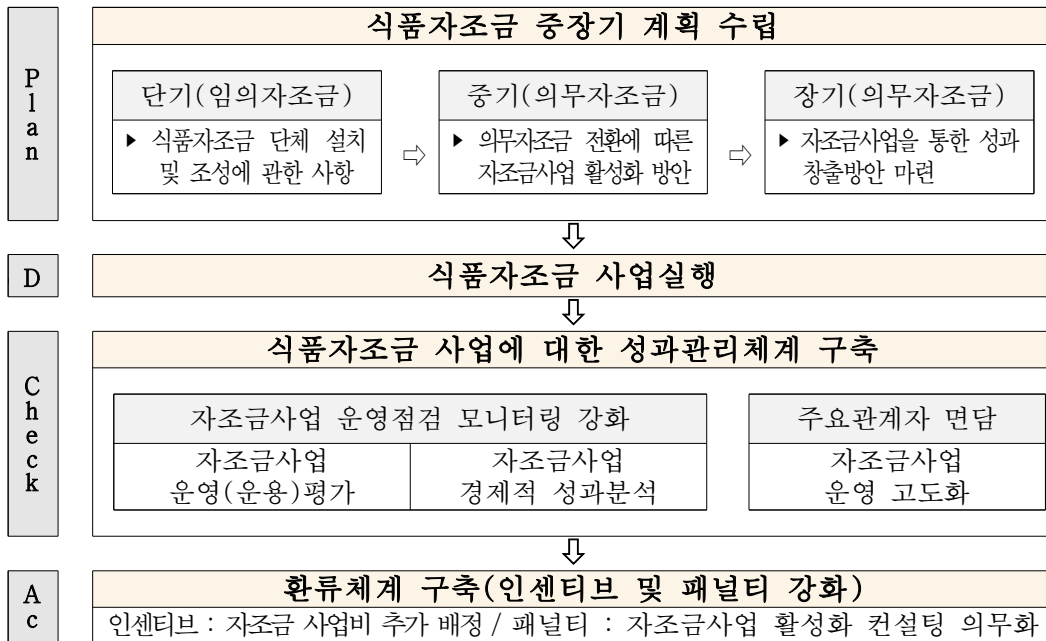
-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㉒) 자조금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식품자조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PDCA(plan-do-check-act)에 기반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4-7>을 참고할 수 있음.³⁰
 - 식품자조금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의거, 5개년 또는 3개년 단위 사업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자조금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자조금사업 운영(운용) 평가, 경제적 성과분석 등을 통해 우수한 식품자조금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식품자조금 단체에게는 자조금사업 활성화 컨설팅 의무화 실시

30 PDCA (plan - do - check - act)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 및 품질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실천→확인→조치를 반복해서 실행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임.

그림 4-7 식품자조금의 PDCA 성과관리 체계 예



- 식품자조금 단체의 효과적인 관리 및 발전 촉진을 위해 주기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표 4-18>과 같은데, 자조금 조성, 자조금 운용, 자조금 단체의 역량 강화 부문별로 세부 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함.

표 4-18 식품자조금 단체 운영평가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
조성 (30)	회원확대실적	10	당해연도 회원 농산업자수-전년도 회원 농산업자수/전년도 회원 농산업자수×배점 단, 점수는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자조금 조성규모	10	(자조금 거출액/김치 총생산액)×배점 회원 거출액은 당해연도 기준임(전년도 이월금액 제외)
	자조금 조성 성장률	5	[당해연도 조성액-전년도 조성액]/전년도 조성액×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	
			조성액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조성액을 의미함 (국고보조금은 매해 예산 책정에 따라 매칭비율이 변할 수 있으므로 제외)	
	자조금 거출성과	5	(총 납부액/총 부과액)×배점 납부, 부과 기준이 되는 회원은 김치제조업체 전체	
운용 (40)	소비홍보	15	다양성+집중도(배점=총배점-다양성 점수) ① 3대 지상파 방송 기획기사 송출(1회 2점, 최대 6점) ② CF 광고 송출(1회 1점, 최대 4점) ③ 일·월간지, 종편 오락·교양프로그램 등(1회 1점, 최대 5점)	
	택1	유통 구조개선	5	유통구조개선 사업집행액/총 사업집행액/20%]×배점 포장재 개선, 유통개선, 유통 투명화 등 유통구조개선 사업실적
		수출 활성화	5	수출활성화 사업집행액/총 사업집행액/20%]×배점 수출마케팅지원, 해외시장개척실적, 수출물류지원 등 수출활성화 실적 *시장분석을 위한 해외방문, 선진지견학 등은 제외
		수급안정 (수요촉진)	5	수요촉진 : 수요촉진사업 집행액/총사업집행액/20%]×배점 판매촉진 사업, 판촉행사, 온라인 판매지원 등 수요확대 (수요처 발굴, 다양화 등)하는 사업실적
	경쟁력제고	5	경쟁력 제고 사업 집행액/총사업 집행액]×배점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 경쟁력 제고 사업 실적	
	조사연구	5	조사연구 예산비중+연구실적 ① 조사연구 예산비중 : (조사연구비 집행액/총 사업 집행액/목표비중(2%)]×배점 ② 연구실적 1건당 1점(최대 3점) 단순실태조사 제외/자조금 조직이 발주한 조사연구 기준	
	사업비집행실적	10	[보조금 집행액/보조금 최종승인액×배점/2+자체조성액 집행액/최종 자체 조성액×배점/2 보조금 교부확정액 대비 보조금 집행률과 총 자체조 성액 대비 자체조성액금 집행율을 합산하여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
역량 강화 (30)	회계의 투명성	8	외부감사 실시여부, 홈페이지 적정공시 여부, 집행 증빙자료 관리 ① 외부감사 실적 여부(2점) ② 홈페이지 적정공시 여부(3점) ③ 집행증빙자료 관리(3점) ① 외부 회계법인 통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만점 부여(미실시 0점) ② 결산현황, 자조금조성·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했을 경우 만점 부여(미실시 0점) ③ 현장 실사시, 집행 서류를 누락하지 않은 경우 만점 부여(누락시 0점)
	연간사업계획	5	사업의 합목적성, 효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적으로 판단 - 상 5점, 중 3점, 하 1점으로 평가 합목적성 : 설치 목적에 따른 자조금 사업운용 등 효율성 : 사업의 효율성 등 미래지향성 : 발전전략 수립, 성과관리 체계 등의 확립 등
	중장기 사업계획	5	계획 이행정도를 상 5점, 중 3점, 하 1점으로 평가 (미수립시 0점) 연차별 계량화된 사업목표 설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 상(70% 이상 달성), 중(40% 이상 70% 미만 달성), 하(40% 미만 달성)
	교육실적	12	회원교육실적+위원 및 직원 교육실적 - 자조금 사업목적·용도 등에 관한 교육 1건당 2점) *교육당 20명 이상 또는 회원수 대비 20% 이상 참 석시 인정 *10명 이상 20명 미만 또는 회원수 대비 10%이상 20% 미만 참석한 경우 1건당 배점의 절반 인정 *비대면 교육 진행 실적 인정(교육자료, 참가 명단 등 확인 필요)
가점	4	모범(우수)사례 창출(최대 2점)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노력(최대 2점)	
감점	-4	현황자료 미구비 및 허위자료 제출(최대 -2점) 증빙·보고자료 지연제출(최대 -2점)	
가감점	±2	관련 법 및 지침 준수여부 - 운영비용의 법률기준 준수여부(±1) - 법 지침 개정에 따른 자체 규정·정관 등 정비 여부(±1)	

다.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 방안

- 식품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서는 자조금 회원의 규모가 해당 산업의 대표성을 가질 정도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식품사업자수(또는 판매액, 판매량 등)의 50% 초과 여부를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농수산물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단체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대표성 평가 기준으로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수가 해당 농산물의 전체 농수산자의 50% 초과하는지의 여부,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지 등의 기준 중에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³¹
- 김치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기 위한 역량을 보다 빠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회원사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므로, 상위 40개 회원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다음, 추가 회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자료에 의하면, 김치류 국내 판매액은 1조 2,358억 원인데 이중 상위 20개소의 국내 판매액은 5,524억 원으로 약 44.7% 차지하므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회원사 확보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

31 「농수산물자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표 4-19 김치류 국내 판매액 상위 20개소 현황

(단위 : 천 원)

순위	업체명	국내판매액
1	대상(주)	153,007,879
2	농업회사법인 품미식품(주)	66,147,573
3	(주)한성식품	45,067,215
4	씨제이제일제당(주)	32,530,584
5	경기농협식품조합공동사업법인	30,982,761
6	선농종합식품(주)	27,983,341
7	(주)아워홈	27,507,465
8	주식회사 한울	21,998,953
9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일품김치	18,424,054
10	도미속식품	16,727,490
11	구미협동식품 합명회사	12,526,687
12	(주)이킴	12,495,945
13	농업회사법인 (주)예소담	12,279,713
14	(주)농업회사법인 연안식품	11,603,456
15	영농조합법인 동학기산마각두기김치	11,488,121
16	(주)강순의명가	10,964,883
17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식품사업소	10,813,728
18	원앤원(주)	10,101,290
19	세광식품(주)	9,959,039
20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	9,835,648
합계		552,445,82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8)

- 추가적으로 30인 이상 종업원수 기준으로 김치류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7,82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59.0%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회원 확보 전략을 지속해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임.

표 4-20 김치류 제조업체 종업원수 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구분	매출액	비중
10인 이하	174,336,074	13.2%
11~20인	250,863,153	18.9%
21~30인	118,766,908	9.0%
31~50인	230,059,985	17.3%
51~80인	191,601,546	14.4%
81~100인	64,475,960	4.9%
101~150인	88,280,022	6.7%
151~200인	24,357,199	1.8%
201인 이상	183,683,601	13.9%
합계	1,326,424,465	10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2018)

- 한편 다른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의무자조금 전환 전략도 검토 가능한데, 2019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종업원 10인 이상)에 의하면 김치류 제조업체의 출하액은 1조 3,331억 원이고 이 중 50인 이상의 김치제조업체 출하액 비중은 52.5%임. 해당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김치류 제조업체 229개소 중 40개소를 회원 확보할 경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대기업의 김치자조금 참여에 따른 공정위의 시장지배력 관련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200인 이상 대기업 4개소를 제외할 경우에는 107개소 회원사를 확보 필요

표 4-21 김치류 제조업체 종업원수 규모별 업체수 및 출하액 현황

(단위 : 개소, 천 원, %)

구분	업체수	업체수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10~19인	118	51.5%	278,563	20.9%
20~49인	71	31.0%	354,174	26.6%
50~99인	31	13.5%	334,516	25.1%
100~199인	5	2.2%	108,750	8.2%
200인 이상	4	1.7%	257,178	19.3%
합계	229		1,333,18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9

-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 목적, 재원확보 방안, 해당 식품의 식품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함. 농식품부는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됨.
- 참고로 해당 품목 식품사업자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 단체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20명 이상 200명 이하)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함.
 -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변경, 감사, 회장(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선출 등을 의결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 선거일, 해당 식품의 식품사업자 수, 대의원 수, 대의원회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대의원 선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실적보고 자료 중 해당 식품의 식품사업자의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

- 법 제28조나 제28조의2에 따른 최근 통계자료나 식품의약품생산실적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 확정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 후보자 적격심사, 기호 추첨, 명부 공고, 공보 배포, 당선자 결정 등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해당 식품의 식품사업자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투표,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설치가 가능함.
- 자조금 단체는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투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2.13. 자조금의 불공정 행위 이슈 대응

가. 가금산업 부당행위 처분 사례의 시사점

- 자조금 단체는 상대적으로 거래 교섭력이 취약한 생산자 등이 산업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경제적 시각에서는 일종의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행위 처분 사례인데, 닭고기 계열화업체의 삼계탕용 신선육 판매가격 및 출고량 합의 등을 담합 행위로 판정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한 경우임.
- 당시 공정위는 자조금 단체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와 공정위의 시각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함.

나. 불공정 행위 논란에의 사전 대응

- 공정위가 자조금 사업의 불공정성을 따지는 기본 논리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적 산업 구조가 형성되었는지, 자조금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제한되었는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근거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함.
- 먼저 식품자조금의 독과점적 산업 구조 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의 구조가 독과점적이지 않거나, 일정 부분 독과점적인 상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김치자조금의 경우, 대기업의 비중은 2.2%로 매우 낮지만 대기업의 김치 B2C시장 점유율은 82%에 달하기에 독과점 상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대기업 김치 판매와 관련된 자조금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특히, 대기업의 주력 시장인 B2C시장의 수요자는 일반 소비자이기에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공동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 2017년 가금산업의 부당행위 논란도 소비자 구매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신선육 판매가격 및 출고량 조정 건이었던 사례 인지 필요
- 따라서, 김치자조금의 수급조절 및 가격조절 사업 전개로 인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산자조금법」, 「축산자조금법」과는 달리 식품자조금법(안)상 자조금용도에 자율적 수급관리 사업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임.
 - 만약, 수급 또는 가격조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및 농식품부와 사전 논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자조금 사업의 확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

○ 반면에 김치 원료 농산물의 공동구매 사업이나 대기업의 시장 점유 수준이 낮은 B2B 시장 등에 대한 사업은 세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임. 특히, 원료 공동구매를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은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소비자 가격 불안정성 완화 등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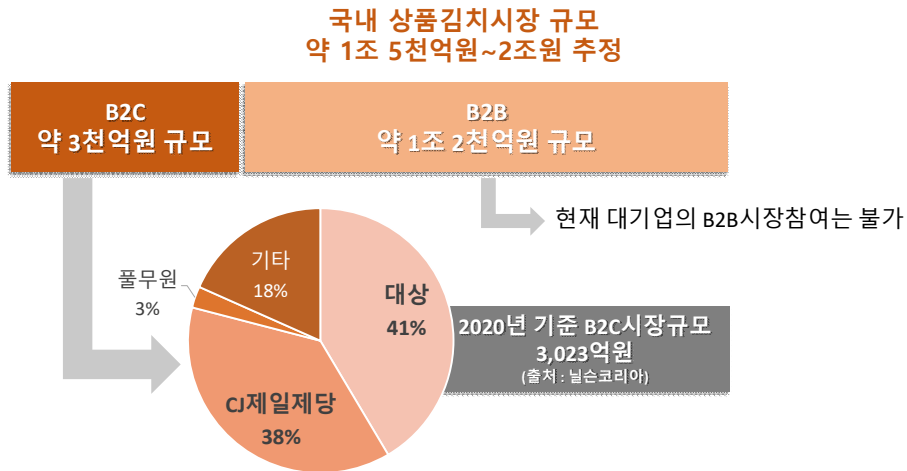
- 김치 원료 농산물의 계약재배 또는 공동구매사업의 경우 김치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원료 농산물 생산자(조직)의 고정 판로 확보 등의 공익적 사업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필요

- 나아가 대부분의 영세 김치업체들이 요청하고 있는 원료 농산물에 대한 저온저장고 지원 또는 관련 시설 용자를 위한 자조금 사업의 추진 검토 가능

- B2B시장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 김치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업 목적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 김치시장의 70%를 차지하는 B2B시장은 공공기관, (사)대한민국김치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자율 협약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³²

32 정부는 2011년 김치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8년 말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선정하여 대기업은 B2B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음. 다만, 이러한 규제가 2019년 해제되었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대한민국김치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자율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일반식당 및 대학에서 철수하고, 중·고교 급식 및 군납시장에의 점유율 확대를 자제하고 있음.

그림 4-8 김치시장의 구조



자료 :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시장 유통구조 및 성공사례 분석, 2016
서울신문, “MZ세대 입맛 잡아라”... 대상·CJ ‘김치전쟁’(2021.07.19.)

-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김치 대기업을 자조금의 특별회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는 현재 김치자조금 조성 및 사업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있는 대기업을 이탈을 유발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다. 자조금 사업의 절차적 관리

- 자조금 사업 중 공정위나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수급조절 및 가격조절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여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위 등의 외부기관과의 논의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 필요한 경우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함.

- 협의 과정에서 김치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김치산업이 노동집약적이고 진입장벽이 낮아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진 산업인 점, 국산 농산물의 원료 사용 비중이 높아 김치산업 육성이 농업 성장에 기여하는 점, 발효식품인 김치는 유통기한이 짧아 일반적인 공산품과 다른 점, 중국산 김치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등을 포함
- 실제로 생산자조직의 공동사업이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감귤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통행정명령제(marketing order) 등이 해당됨. 따라서,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여 공정위의 가금산업에 대한 부당행위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유통행정명령제는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 조직이 농식품부 장관에 건의하여 출하 조절 등의 시장 개입을 행정 명령으로 진행하는 제도인데, 해당 과정에 공정위 등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 명시
 - 가금산업의 부당행위 처분 사례에서 공정위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가금업계가 공정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출하조절을 실시하였다고 문제 제기

2.2. 자조금 조직의 역량 및 기능 강화

2.2.1.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

가. 조직 확대

- 식품자조금 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업무고도화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농축산자조금 조직 현황을 보면 <표 4-22>와 같음. 자조금 사업규모가 10억 원 이하인 품목의 자조금관리위원회는 3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조금 단체 업무를 겸직하는 구조로 김치자조금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음.
- 20억 원 이상 규모의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는 4명(사무총장, 총무회계팀, 기획홍보팀, 행정교육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조금 단체와 겸직하는 구조를 가짐. 반면에 30억 이상의 자조금 조직부터는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본격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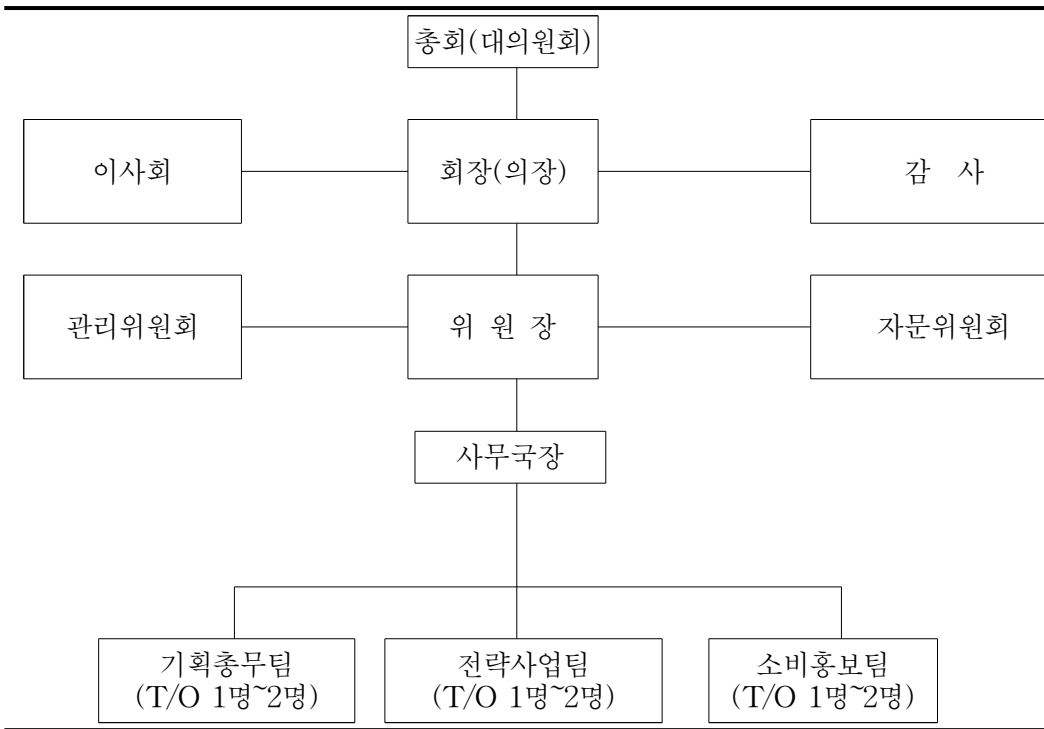
표 4-22 자조금사업 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현황

자조금 조성액 기준	해당 품목	전담인력	비고
20억 원 이상	인삼	4	자조금 단체와 겸직
30억 원 이상	친환경	6	
100억 원 이상	낙농	7	
300억 원 이상	한돈	14	
	한우	13	

자료 : 각 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사람인)

- 식품자조금 단체는 자조금 조성 규모를 감안하여 전문분야별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식품의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다 구체적으로 김치자조금의 경우 회원수 확대 및 거출율 제고를 통해 자조금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20억 원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100억 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조직 구조를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그림 4-9 식품자조금 단체의 조직 체계(안)



나. 인력 총원

- 식품자조금 단체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필요 인력에 대한 적절한 급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식품자조금의

운영경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특히 김치자조금의 경우 총사업비의 15%를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규모가 작아 적정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자조금 조성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농수산물자조금은 총 사업비의 20%, 축산자조금은 총 사업비의 8%를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고, 지조금 규모가 10억 원 미만시 농수산물자조금은 총 사업비의 30%(단, 2억 초과 불가), 축산자조금은 총사업비의 10%를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규정
- 식품자조금은 자조금 총 사업비 중 운영경비 비중이 없기에, 향후 식품자조금법 제정 시 「농수산물자조금법」을 준용하여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20% 이내로 운영경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도입 필요
- 나아가 식품자조금의 운영경비 중 인건비의 비중을 50% 이상 설정할 수 있는 규정도 검토 가능

표 4-23 축산자조금 운영관리비 및 인건비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한우자조금	한돈자조금	우유자조금	평균
운영관리비(a)	1,782,252	1,196,668	709,476	1,229,465
인건비(b)	715,000	732,550	378,980	608,843
운영관리비 대비 인건비 비중(b/a)	40.1%	61.2%	53.4%	49.5%

주) 인건비는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사람인) 평균연봉을 토대로 추정함

- 자조금 인력의 직급별 연봉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자조금 단체의 연봉 현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내용이 <표 4-24>와 같은데, 평균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이나 직급별로 3천만 원대부터 7천만 원대로 구성되어 있음.

표 4-24 축산자조금 단체 직급별 연봉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	평균
사원(고졸)	36,320	29,000	35,760	33,693
사원(초대졸)	39,880	32,980	39,260	37,373
사원(대졸)	43,280	37,060	42,610	40,983
주임	47,600	44,050	46,860	46,170
대리	52,110	52,180	51,300	51,863
과장	59,880	61,230	58,950	60,020
차장	66,420	68,280	65,390	66,697
부장	72,710	75,040	71,580	73,110
대졸초임	43,510	37,090	42,830	41,143
평균연봉	55,000	52,350	54,140	53,830

자료 :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사람인), 각 자조금관리위원회 연봉정보

○ 이상의 내용에 기반하여 연차별 자조금 조성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였음. 연구 결과, 자조금 거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자조금 조성 규모에 따른 전담 인력 확보 방안을 <표 4-24>와 같이 도출할 수 있는데, 자조금 조성 초기에는 2명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다가 이후 자조금 규모 확대에 따라 최대 14명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자조금 거출 기준은 김치류 판매액을 기준으로 초기에는 0.1%를 적용하고, 적정시점에 거출 기준을 상향하여 판매액의 0.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 거출율은 초기에는 50%로 설정하고 연차별로 상향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거출 기준 상향을 고려하여 거출율은 재조정되는 것으로 반영

- 운영관리비는 자조금 사업규모의 20%로 책정하고, 이 중 인건비는 50%로 설정
- 평균연봉은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 3개 축종(한우, 한돈, 우유)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최근 10개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성장률 1.1%씩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

표 4-25 연차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전담인력 확대 방안

(단위 : %, 천 원,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거출기준	0.1	0.1	0.1	0.1	0.2
거출율	50	60	70	80	60
자조금 조성규모	1,308,872	1,570,646	1,832,421	2,094,195	3,141,293
운영관리비	261,774	314,129	366,484	418,839	628,259
인건비	130,887	157,065	183,242	209,420	314,129
평균연봉	53,830	54,426	55,028	55,637	56,253
전담인력	2.4	2.9	3.3	3.8	5.6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거출기준	0.2	0.2	0.3	0.3	0.4
거출율	70	80	70	80	70
자조금 조성규모	3,664,842	4,188,390	5,497,264	6,282,587	8,376,782
운영관리비	732,968	837,678	1,099,453	1,256,517	1,675,356
인건비	366,484	418,839	549,726	628,259	837,678
평균연봉	56,876	57,506	58,142	58,786	59,437
전담인력	6.4	7.3	9.5	10.7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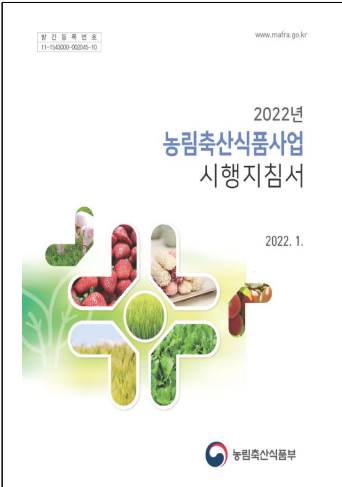
2.2.2. 전담 사업 운영을 통한 역할 확대

가. 정책사업의 협업 강화


- 식품자조금이 회원사의 지지도를 높이고 거출금 규모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자조금 사업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있음. 일례로 김치자조금의 경우 기존 자조금 사업만으로는 사업량과 사업 성과에 한계가 있어 자조금 단체의 필요성을 회원사에게 인정받는 데 시일이 걸림. 김치업체의 사업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관련 정책사업 일부에 참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등의 현장 일선 업무 일부를 자조금 단체가 대행하는 방안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과 자조금 단체의 역량에 따라 단계별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1단계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희망하는 회원사의 지원사업 신청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치산업과 연관된 농림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회원사에 제공하고, 수요업체에게 사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 사무국에서는 매년 초 농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각종 지침을 토대로 식품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 일괄 정리하여 회원사 배포

- 식품자조금단체 회원사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 각 사업별 기본요건 및 평가지표에 의한 진단표 양식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사업 신청을 위한 가능성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
- 식품자조금단체에서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풀(Pool)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원하는 회원사에 대해 현장 컨설팅 등을 운영하여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식품자조금단체에서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진행

그림 4-10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지침서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022. 1.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I 중소벤처기업부 편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자격·요건	비고
농업법인·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법」 제4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종·가공법인은 신청제외
출자금액	1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사 제정사업관리 기준규율 제외도 관련 * 농업법인에 한함
운영실적	1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역한 등 비법인의 법인 전환 경우,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법인의 미인 농촌신용사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신청 기본요건	농업법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조합법인 : 포함된 5인 이상에 농업인원 것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총자본분의 전체 30%이상일 것
	가공업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가와 계약제 또는 별도 실적(최근 2개년) * 연간 2천원 이상
	사업부처 확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사업자 정의의 사업부처 소용권 확보 또는 보조사업의 직후 권자(기간2년) 이상으로 자살된 등 인정 합보제출 등 제안된 행위에 계약이 있는 때에는 제외 단, 신청 후 사업에서 이전 계약된 계약 등을 조건으로 신청한 사업 자
	지역농업 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원) 지역 농축산물 이용(채널화) 지역 농가소득 향상과의 연계성
	과금관료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취금 능력,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 건전성 * 자취금에 상당하는 외화(외국) 이상 확보
사업구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예산 등) 확인 	

표 4-26 정부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추진절차(안)

구분	주요내용
1단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등 김치(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정리 및 제작(배포)
2단계	식품자조금단체 회원사 대상 사업 수요조사 및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3단계	사업별 기본요건 진단표 작성을 통한 사업신청 가능성 사전 검토 실시
4단계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풀(Pool) 구성, 컨설팅 매칭 실시
5단계	식품자조금단체 회원사 및 전문가 대상 추진상황점검과 관리체계 구축

- 일례로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는 6차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 운영 계획이 있는 대상자에게 자가 진단 코너를 운영하여 사업 운영에 참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 풀을 통한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을 실시 중

표 4-27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사항

분야	지원대상사업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세무(관세), 법률, 금융, 정부사업, 창업, 귀농귀촌 등 • (경영) 경영전략, 기술특허, 마케팅, 수출, 회계, 생산성 향상, 지적재산권 등 • (제품) 디자인, 유통, 체험프로그램, 메뉴개선 등 • (홍보) 마케팅, 스토리텔링 등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생) HACCP,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 • (건축, 토목) 공장신축, 인테리어, 공정개선, 경관개선 • (설 비) 자동화설비, 기계, 기술트랜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분야 외 코칭이 필요한 분야는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상기 외 농업 6차산업화 관련 전문분야

자료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홈페이지

- 추가로 자조금 납부 회원사에 대한 정책적 유인을 강화하여 자조금의 정착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자조금 납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의 사업 요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표 4-28>의 우대사항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음.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
 -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은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배점 부여

표 4-28 농림사업 중 자조금 납부 우대사항 사례

사업명	지원자격 및 요건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품목: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배추, 무: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건고추: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3백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6백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마늘, 양파: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마늘 1천톤, 양파 3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마늘 2천톤, 양파 5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p><우선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	<p>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사업대상자는 적정 배점 부여 <평가항목></p> <table border="1" data-bbox="459 1697 1294 1839"> <thead> <tr> <th data-bbox="459 1697 671 1744">평가항목</th> <th colspan="2" data-bbox="671 1697 818 1744">평가점수</th> <th data-bbox="818 1697 1294 1744">세부평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9 1744 671 1839">13.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2)</td> <td data-bbox="671 1744 746 1839">2</td> <td data-bbox="746 1744 818 1839">0</td> <td data-bbox="818 1744 1294 1839">품목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여 2, 부 0)</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점수		세부평가내용	13.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2)	2	0	품목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여 2, 부 0)
평가항목	평가점수		세부평가내용						
13.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2)	2	0	품목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여 2, 부 0)						

- 1단계 사업으로 자조금 단체의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다음,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조금 단체가 정부지원 사업 지원창구 및 배정 역할을 수행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
 - 김치자조금 단체의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무·배추 비축 물량 일부를 회원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유사 사례로 한국장류협동조합과 쌀가공식품협회의 사업을 참고 가능³³
 - 또한 김치 원료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시스템을 정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업도 검토 가능

- 3단계 사업으로는 정부의 신규 지원사업 발굴 및 지자체 정책연계 강화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김치자조금 단체가 회원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수집 및 정리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제출
 - 참고로 한국장류협동조합 2021년 중점운영방향³⁴을 보면,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사 대상 공동 구판매사업, 정부지원사업 정책안내 및 대정부 건의, 장류산업발전 지원사업 강화, 장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 장류 홍보사업, 중장기사업 수립 추진 등을 추진

33 한국장류협동조합에서는 직배용 수입 대두, FTA 수입 대두, 수입권 공매에 대한 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체별 대두 사용 실적대비 균등 배정으로 공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쌀가공식품협회에서는 가공용 쌀 공급관리를 통한 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통한 정부지원 사업의 창구역할 수행함.

34 자세한 내용은 부록 6을 참고할 것.

표 4-29 한국장류협동조합 중점운영방향(요약)(사례)

주요사업	사업내용
공동구매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FTA 등 수입대두 공급 및 비축물자 공급 확대 • 장류제조용 원·부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 공동판매사업 활성화
정부지원사업 정책안내 및 대 정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 및 R&D 지원사업 추진 • 코로나19 정부 정책 지원사업 등 정보사업추진 • 산·학·언론 협력사업 • 장류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등 대정부 건의
장류산업발전 지원사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류산업발전진흥법 제정사업 추진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소스센터 협력사업 추진
장류제품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류 안전성확보 및 산학연 협력사업 • 간장 3-MCPD 기준 안정화사업 • 지도사업 • 장류 글로벌화 사업
장류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의 날 제정 및 행사추진 • 장류 인식제고 및 우수성 홍보사업
조합운영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정보화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 조합 정관, 규약, 규정 관리 •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시스템 운영 안정화 • 임직원 능력함양을 위한 교육
증장기사업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증장기 계획 수립 추진

자료 : 한국장류협동조합 홈페이지

나. 공모사업 참여

- 자조금 단체가 주도하여 해당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실제 농업 생산자단체들이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기에,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임.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로는 한국참다래연합회, 한구과수농협연합회 등의 농산 조직과 한국양봉협회, 한돈협회, 오리협회 등의 축산 조직이 해당
- 특히 한돈협회에서는 2012년 이후 수출시장 마케팅 전략 수립과 한돈 품질고급화 등과 관련하여 5개의 연구과제 참여

표 4-30 자조금 단체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모사업 참여 사례

발주기관	주관연구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비고
농기평	한국참다래연합회	참다래 통합마케팅 구축	2017-06-28~ 2017-08-18	키위자조금
농기평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과, 배, 복숭아 무변화 최적기술개발	2020-04-29~ 2024-12-31	사과자조금
농기평	한국양봉협회	벌꿀에서 꿀벌 병원체 종합 검색 시스템 개발	2010-07-01~ 2013-06-30	양봉자조금
농기평	한돈협회	수출시장 조사를 통한 전략 수립	2012-10-09~ 2013-03-08	한돈자조금
농진청		마케팅 전략수립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2013-07-25~ 2017-05-02	
농기평		마케팅 전략수립을 통한 수출시장 구축	2013-07-25~ 2017-02-28	
농기평		한돈 품질고급화를 위한 농장별 맞춤형 정액 공급체계 구축	2020-04-29~ 2021-04-28	
농기평		구제역 백신의 돼지 출하 일령 항체수준 모니터링 연구	2020-04-29~ 2021-12-31	
농기평	오리협회	오리 전용 축사설계도 개발	2019-06-20~ 2020-06-19	오리자조금

자료 : 농림식품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한편, 식품관련 유관단체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이 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참고가 필요함.

- 한국쌀가공협회는 2009년 이후 4개의 과제 참여하여 기술개발, 수출 활성화, 프로모션 등을 실시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는 2013년 이후 2개 과제 참여하여 기능성에 대한 연구 진행

표 4-31 식품관련 유관단체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 사례

발주기관	주관연구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농기평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 전통 떡볶이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연구	2009-04-01~ 2012-03-31
농진청		블렌딩 모델 설정	2011-08-01~ 2012-12-31
농기평		즉석 라이스푸드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2013-11-20~ 2015-11-19
농기평		제조회원사 관리·운영 및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모션 진행	2019-08-01~ 2022-01-31
농기평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잣송이 추출물의 기능/지표성분 분석법 확립 및 Method Validation	2013-07-16~ 2016-07-15
농기평		갈색겨저리 유충 유래 기능성 원료 특성 규명 및 표준화 확인	2021-04-01~ 2024-12-31

자료 : 농림식품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김치자조금의 경우, 김치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김치류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표 4-30>과 같은 농림사업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자조금 단체의 역량을 키우고 김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사업 참여 초기에는 자체적인 연구 역량 및 사업 관리 역량이 부족하기에 연구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사업 실무를 익히는 것에 주력
- 이후, 일정 수준의 역량에 도달하면 회원사의 연구 수요를 수집 및 정리하여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역할 강화

표 4-32 김치관련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현황

발주기관	주관연구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농기평	세계김치 연구소	5G 기반 김치 원료 배합공정 제어관리 기술 개발	2021-04-01~ 2025-12-31
	(주)김치라인	5G 기반 김치절임 자동화 설비 구축 및 운영시스템 실증	2021-04-01~ 2025-12-31
	대상(주)	김치 양념 배합공정 자동화 설비 및 제어관리 시스템 현장 적용 평가-1	2021-04-01~ 2025-12-31
	주식회사 채자연	김치 양념 배합공정 자동화 설비 및 제어관리 시스템 현장 적용 평가-2	2021-04-01~ 2025-12-31
	농가식품	김치 양념 배합공정 자동화 설비 및 제어관리 시스템 현장 적용 평가-3	2021-04-01~ 2025-12-31
	(주)정광	김치 양념 배합공정 자동화 장비 개발	2021-04-01~ 2025-12-31
	세계김치 연구소	김치 절임 공정 최적화를 위한 자동화 최적 운영 시스템 기술 개발	2021-04-01~ 2025-12-31
	한국식품연구원	김치 절임 및 홍삼 증숙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한 5G 기술 기반 운용 시스템 개발	2021-04-01~ 2025-12-31
	(주)뜨레찬	김치 종균 산업체 현장 적용 및 실증 연구	2021-04-01~ 2022-12-31
	세계김치 연구소	김치 종균 항균 활성 극대화 및 최적 첨가법 개발	2021-04-01~ 2022-12-31
	세계김치 연구소	김치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탈취 포장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2021-04-01~ 2023-12-31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주)네고팩		
	세계김치 연구소	나노 발포 구조체를 이용한 전면적 통기성 포장지 상용화 기술 개발	2021-04-01~ 2023-12-31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지큐지원			
대상(주)	배추 절임특성 관련 지표인자 선별을 위한 데이터 구축	2021-04-01~ 2025-12-31	

자료 : 농림식품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다. 타 자조금 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

○ 식품자조금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식품 원료를 공급하는 농축산자조금 또는 식품자조금 단체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이는 산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창출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의 상생 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관련 사례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사)인삼협회가 2019년 3월에 소비촉진 활성화 MOU체결을 통한 공동 홍보체계 구축 사업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농산물과 축산물이 협업하는 최초의 사례로 매년 방송과 언론, 오프라인 행사에서 우유와 인삼을 활용한 요리를 소개

표 4-33 우유와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공동 레시피 개발 사례

홍삼청라떼	인삼우유양갱
<p><재료> 우유 200~250ml, 인삼 1뿌리, 꿀 1~2T,</p> <p><만드는 법> 1. 인삼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 머리 부분을 자른 후, 적당한 크기로 썬다. 2. 믹서기에 썰어놓은 인삼과 우유, 꿀을 넣고 갈아준다. 3. 갈아낸 라떼를 유리컵에 붓고 홍삼청을 넣어 섞어주면 완성이다.</p>	<p><재료> 우유 400ml, 인삼 70g, 설탕 20g, 물엿 1/2작은 술, 물 20ml, 한천가루 7g, 설탕 80g, 꿀 30g</p> <p><만드는 법> 1. 우유에 한천가루를 넣고 20분 이상 불려준다. 2. 인삼은 1×1cm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준다. 3. 냄비에 인삼과 설탕, 물, 물엿을 넣고 은근한 불에 졸여 인삼정과를 만든다. 4. 1에 설탕을 넣고 같이 끓이다가 마지막에 꿀을 넣어준다. 5. 끓인 우유를 틀에 담고 인삼정과를 넣어 굳혀주면 완성이다. Tip. 인삼 맛을 더욱 느끼고 싶을 때는 홍삼 농축액을 넣어주면 좋다.</p>

자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 김치자조금 단체는 타 자조금 단체와의 연계 강화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협업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1단계로는 김치의 원부재료인 무·배추, 양파·마늘, 고추 자조금 단체와 연계하여 김치 제조업체에 안정적인 원부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사업 추진
 - 2단계로 김치와 타 품목 자조금 단체간 공동사업을 통한 신상품 개발(인삼김치, 사과김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공동 홍보하는 사업 진행
 - 3단계는 향후 조성되는 식품자조금 단체(전통주, 장류, 전통식품 등) 연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해외시장 공동마케팅사업 등을 추진

2.3. 자조금 사업의 구조 개선 및 성과 제고

2.3.1.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기본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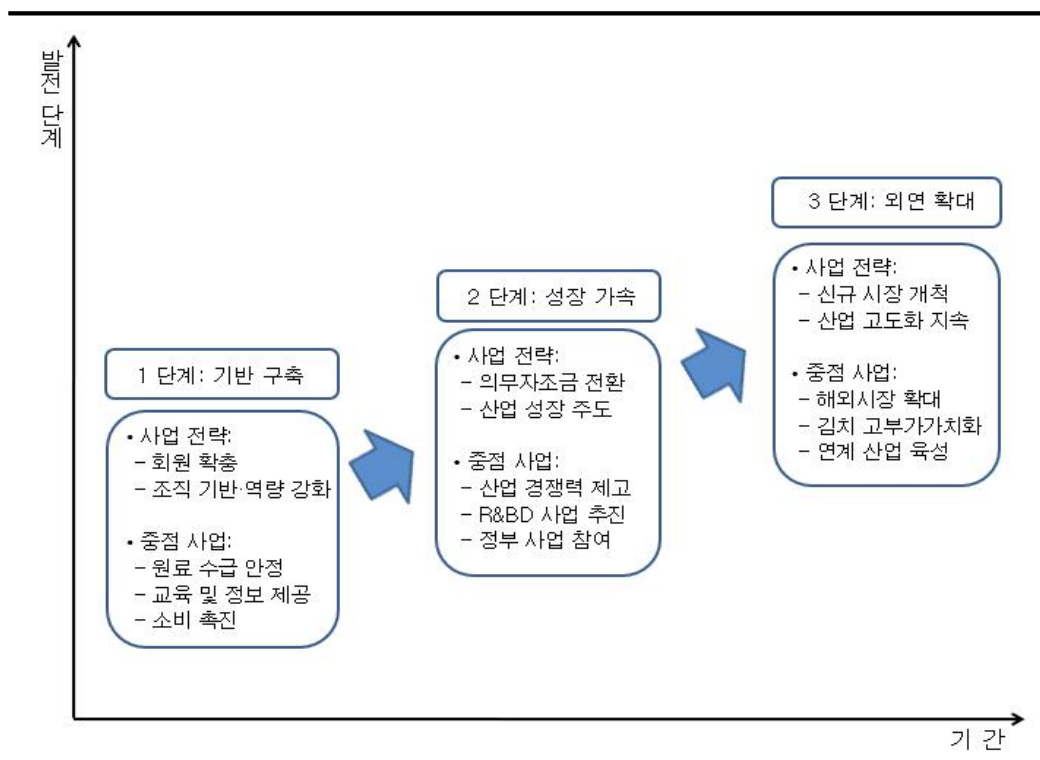
가. 기본 전략

- 김치자조금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성과를 개선하여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안 대응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에 기반을 둔 체계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를 위한 세부 로드맵이 <그림 4-11>과 같이 제안될 수 있는데, 김치자조금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1단계는 김치자조금의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에는 참여 회원 업체와 자조금 단체의 역량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

- 2단계는 김치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진화된 이후의 단계로 김치자조금이 김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에 집중
- 3단계는 김치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는 단계로 김치자조금이 기존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탐색 주도

그림 4-11 김치자조금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나. 단계별 주요 사업

(ㄱ) 기반 구축 단계

- 김치자조금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단계로 김치자조금의 회원 업체 수가 우리나라 전체 김치업체의 16.5%에 그치고 자조금 단체의 실무 인원이

3명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자조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 확충과 자조금 단체의 기반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세부적인 중점 사업으로는 김치의 원료 수급 안정 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 김치 소비 촉진사업 등이 있음. 먼저 원료 수급 안정사업은 김치의 주요 원료인 5대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김치업체의 사업 수요가 높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분이 높아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세부 사업인 김치 원·부재료에 대한 저장유통 물류비용 지원사업은 김치업체의 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나아가 농협, 산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산지 저장공간을 김치자조금에서 직접 발굴 및 확보하여 김치업체가 저렴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대 필요³⁵

- 농식품부가 aT 등을 통해 비축하고 있는 건고추, 배추 등의 원료 농산물을 김치자조금에서 수요 김치업체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역할 수행에 대한 검토 가능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었던 김치재료 계약사업을 다시 진행하되, 원료 농산물 자조금 조직 등과의 협업 사업으로 진행하고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risk) 완화를 위한 공동 기금을 농산물 자조금 조직 등과 공동 조성하여 시범 운영 후 확대³⁶

- 자조금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되면, 원료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회원 업체의 구매 비용 일부를 자체 보조하는 사업도 도입 가능³⁷

35 특히, 산지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산지 저장창고 등을 지자체 등과 공동 조사하여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김치 원료 농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36 계약재배사업은 농산물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해당 사업에의 지원을 농식품부에 요청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12 aT 청원 비축기지의 건고추 비축창고



○ 김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보 제공사업은 김치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교육 및 컨설팅 방식으로 제공하고, 자조금의 역할과 필요성도 같이 홍보하여 김치업체의 회원 참여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위생안전/품질검사 사업을 개선하여 HACCP 관련 교육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정책 및 규제 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공지, 농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체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사업 신청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해당 사업에 대한 회원 업체의 만족 수준 및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개선에 반영

37 예를 들어, 천일염이나 건고추 등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회원 업체의 구매비용을 일정 부분 자조금으로 보조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와 같이 대상 업체가 납부한 자조금을 다시 환급하는 형태의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을 통해 생성되는 교육 내용 및 정보는 김치자조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회원 업체 및 참여 대상 업체들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공지하여 회원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 수준 제고에 활용
 - 지원사업 신청 컨설팅의 경우, 김치자조금에서 관련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여 운영
- 김치 소비촉진사업은 국산 김치의 소비를 확대하여 김치업체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편적인 행사성 사업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기존 행사성 사업을 정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B2B 시장에서의 국산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신규 사업을 도입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김치 홍보사업은 세계김치연구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파급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리³⁸
 - 우리나라 김치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저가 수입산 김치의 비중이 큰 B2B 시장에서의 국산 김치 수요를 높이기 위해, 국산 김치 자율표시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산 김치 사용 업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홍보하여, 외식 소비자가 외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 유무를 쉽게 파악하고 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을 요구하도록 여건 개선
 - 국산 김치의 우수성과 저가 수입산 김치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하여야 하는데, 관련 콘텐츠를 세계김치연구소, 농촌진흥청 등

38 예를 들어,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문화 및 조리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를 공동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김치 체험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업 진행이 가능함.

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생산한 다음, 이를 언론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홍보

(L) 성장 가속 단계

- 기반 구축이 완료되면, 김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김치 관련 R&BD 사업 추진, 정부 사업의 적극 참여를 통한 정책 파트너 역할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은 크게 김치의 질적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데, 김치의 질적 경쟁력 제고 사업은 김치에 대한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의 관능적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김치 업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고, 가격 경쟁력 제고 사업은 노동집약적인 김치산업의 구조를 개선시켜서 수입산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는 국산 김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데, 관련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김치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은 영세 김치업체가 생산하는 김치의 품질을 개선하여 김치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김치 공정의 표준화를 위한 레시피, 매운 맛 등의 관능 지표의 개발 보급 등이 필요
 - 김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김치 공정의 기계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 절감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데, 이미 일부 업체를 통해 진행 중인 김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참고 가능³⁹

39 김치 스마트 팩토리는 중소기업벤처부, 세계김치연구소, 삼성전자 등의 협업을 통해 도입한 김치 자동화 공정사업으로 김치 소 넣기 자동화 설비를 통해 관련 인력을 줄여 김치 원가를 절감함.

그림 4-13 김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적용 사례



자료: 정책 브리핑(www.korea.kr)

- 김치 관련 R&BD 사업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기존의 연구 용역사업에서 나아가 김치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R&BD를 주도하도록 함.
 - 김치관련 R&BD 과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사업 등에 포함 되도록 하여 김치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 주도⁴⁰
 - 김치자조금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되면, 관련 연구사업을 직접 공모하여 필요한 R&BD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한우자조금 등 축산자조금에서는 매년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 중

⁴⁰ 사업 초기에는 연구 기관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사업 역량을 키운 다음, 이후에 직접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육성하여 활용함.

표 4-34 한우자조금 연구과제 공모 내용: 2022년

구분	사업내용
지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 탄소중립 시대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마련 연구 • 한우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수태율 저하 개선방법 개발 연구 • 한우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수태율 저하 개선방법 개발 연구 • 2021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자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고기) 우수성 발굴 분야 • 환경영향평가 및 규제대응 분야 • 한우산업 관련 정책·제도 분야 •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분야 • 한우산업 관련 기타 분야

자료 :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한 정책 파트너의 역할 강화 사업은 앞서 기반 구축단계에서 정부 사업에 일부 참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김치산업의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일부 정책의 일선 현장 창구 기능을 수행하여 김치산업 관련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굳히도록 함.

- 기반 구축단계에서는 산지 원료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김치업체의 원료 확보 관련 사업에서 정책 현장 지원 및 대상 업체 선정 자문 등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었으나,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고 우리나라 김치업체의 대표성을 확보한 성장 가속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참여 사업 추진 가능

- 매년 김치업체의 정책 건의 사항을 수집하여 농식품부 등에 정책 건의 및 사업 제안을 하고, 김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의 일선 업무를 일정 부분 대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㉔) 외연 확대 단계

- 김치자조금의 조직과 사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김치자조금이 원료 농산물의 수급 및 김치 공급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게 됨. 따라서 3단계에서는 김치자조금이 김치산업의 외연을 확대시켜나가야 하는데, 김치의 추가적인 신규 시장 개척 및 김치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 김치의 신규시장 개척은 해외시장 확대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출시로 구분될 수 있음. 이 중 해외시장 확대는 김치수출협의회 등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김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출시는 이전 단계에서 추진된 R&BD 사업의 결과물을 상용화하여 김치산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도록 함.
 - 김치의 수출 활성화는 김치자조금보다는 김치수출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김치수출협의회의 기능이 김치자조금 사업에 포함되어 종합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⁴¹
 -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김치자조금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미 민간 기업에서 김치유래 기능성 유산균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 중
 - 나아가 기능성 원료를 김치 제조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김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들이 민간업체들을 통해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필요

41 김치수출협의회는 45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수출 물류비, 공동마케팅 사업비를 정책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협의회 사무국을 한국 농림식품 수출입조합에서 일괄 대행 중임.

그림 4-14 김치 유산균 상품 사례



자료 : CJ 제일제당

- 김치산업의 고도화는 김치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보다 다양한 추가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김치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자 식품산업의 주력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함.
 - 김치산업의 후방산업의 농업에 대해서는 김치 제조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방식을 개발·적용하여 김치의 가공적성에 맞는 원료 농산물을 확보해 나가 김치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⁴²
 - 김치산업의 전방산업인 외식산업에 대해서는 김치를 활용한 추가적인 레시피 개발, 김치와 연관된 전통 및 퓨전외식 산업에 대한 틈새시장 (niche market) 개척 등이 가능

42 일례로 저장가능 기간이 더 길고 식감이 우수한 배추 품종 개발, 기계화 재배가 용이한 고추 품종 개발 및 재배 및 수확 과정에서의 기계화 도입 등의 사업 등이 있음.

2.3.2. 협회 및 자조금 사업 분리

- 자조금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자조금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데, 일부 사업의 경우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목적을 가진 자조금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수준이 낮아 조정이 필요함.
 - 일례로 2020년부터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으로 중단된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김치회원사, 김치협회, 협력사가 해외 수출시장을 견학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조금 사업보다 김치협회 사업의 성격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소비촉진 홍보사업 중 김치의 날 기념행사 사업도 김치협회의 고유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협회 사업과 자조금 사업의 분리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재원과 사업 관리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 및 인력 확충, 회원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김치협회 내부 자조금 관리규정에는 자조금이 타 회계와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김치협회 정관에는 김치협회 재정이 자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업 재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정비 필요
 - 김치자조금 담당 인력들이 김치협회 사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어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 필요
 - 자조금 회원 일부는 업체가 아닌 개인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김치 자조금 회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은 김치협회 회원으로만 등록하는 방안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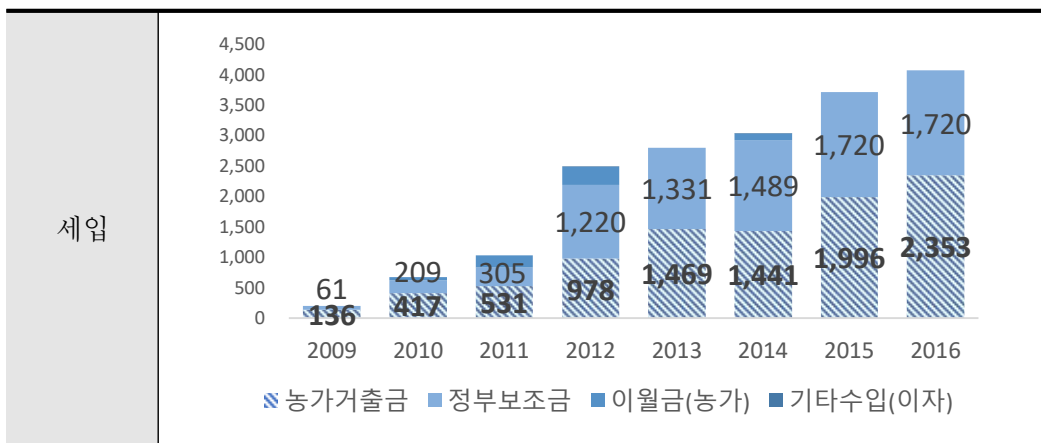
- 추가적으로 협회(자조금 단체)사업과 자조금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사례로 한국오리협회가 있는데, 오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회원을 구성하고 회원사에서는 자조금과 별도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
 - 한국오리협회의 협회 사업으로 오리 소비홍보 및 출판사업, 생산성 향상 및 기술지도, 종오리 검정사업 및 종축관리, 오리산업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사업, 조사통계 및 R&D 사업, 국내산 오리인증 사업 추진
 -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소비홍보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업, 수급안정 사업을 별도 추진

부록 1. 닭고기자조금의 내부갈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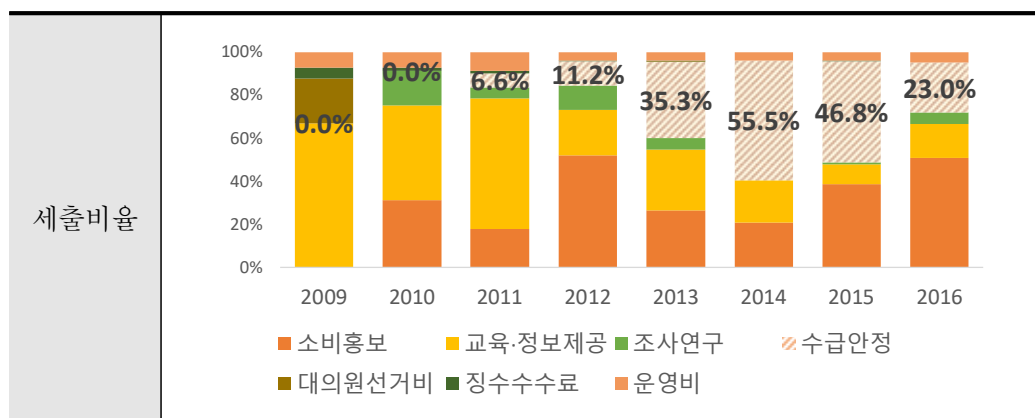
가. 닭고기자조금 개요

- 닭고기자조금은 1992년 한돈자조금과 함께 임의자조금으로 출발하여 2009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었음. 의무자조금 전환 초기 기금 규모가 약 2억 원 규모로 영세했으나, 2016년 40억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함.
- 사업비 사용은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사업에 지출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다른 자조금들과는 다르게 수급안정 항목의 비중이 큼.
 - 이는 최근 과당경쟁에 따른 육계 수급 문제로 주요 육계 계열사의 영업 적자가 심화되는 것이 큰 원인

부록 그림-1 닭고기협회 세입(2009~2016)



부록 그림-2 닭고기협회 세출비율(2009~2016)



- 최근에는 자조금 내 갈등이 고조되면서 의무자조금 폐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닭고기협회 내부갈등은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계열업체 소속)의 갈등 및 무임승차 논란으로 요약될 수 있음.

나. 내부갈등 개요

- 닭고기자조금은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 등 주관단체가 많음. 주관단체별로 닭고기자조금을 산하 단체처럼 취급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단체별 주도권 다툼이 있었음. 닭고기협회의 내부갈등은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계열업체 소속)의 갈등 및 무임승차 논란으로 요약될 수 있음.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자조금 조성액의 약 97%가 육계계열업체와 소속 농가들이 납부하고 있는 반면, 토종닭농가(1.41%)와 종계농가(1.03%), 일반 육계사육농가(0.28%)의 납부 비중은 3%가 채 되지 않았음.
- 육계계열업체 소속농가들의 모임인 전국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2019년 자조금 집행과정에서 납부기여도에 따라 자조금 예산을 적정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양계협회가 자조금 거출률을 높이려는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여 자조금을 사용하기만 한다는 불만이 제기됨. 이러한 갈등은 2019년 당시 닭고기자조금관리 위원장이 자조금을 미납해온 양계협회 소속 전국 40개 도계장 대신 기존 육계계열화 업체 20여 개소에만 의무거출금 미납액 8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무임승차 논란에 정점을 찍었으며, 이는 의무자조금 폐지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짐.

- 육계자조금을 납부하는 4,790 농가 중 2,410 농가가 자조금 폐지에 찬성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2019년 닭고기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

- 육계의 경우 계열화사업이 95%에 이룸. 따라서 육계계열업체 소속 농가들은 닭만 잘 키워서 업체들로부터 사육 수수료만 잘 받으면 된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조금 사업의 수혜자라는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며, 참여의지 또한 약함.
- 2020년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의 자조금 존속 찬반투표에서는 폐지 반대가 46표, 찬성이 7표에 그쳐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됨. 2019년 닭고기자조금 거출률은 10.9%까지 떨어졌고, 2020년에는 1% 미만을 기록함.

부록 2. 식품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산 농산물 활용한 식품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식품산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식품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식품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의무거출금"이란 식품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8. "임의거출금"이란 식품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9.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10.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11.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2.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제3조(식품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식품에는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식품 부류를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식품의 소비촉진 홍보
2. 식품사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식품의 원부재료의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식품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식품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식품자조금단체 가입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식품의 자율적 수급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 및 농식품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 가능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의무자조금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식품이 식품사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재원 확보 방안
 3. 해당 식품의 식품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해당 식품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개정 2017.10.31.>) ① 의무거출금은 식품사업자별로 해당 품목 생산량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해당 식품의 식품사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식품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총회는 재적 식품사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식품사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식품사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
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대의원회) ① 식품사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식품사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식품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위원장은 총회(제12조에 따라 대의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식품사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식품사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위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의무거출금의 수납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식품의 경우 식품사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식품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식품사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식품사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식품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의 생산, 유통, 식품 원부재료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사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③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식품사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식품사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식품사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식품사업자 생산량, 생산액, 판매액 등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판매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⑧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임의자조금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자조금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식품의 식품사업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식품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1. 임의자조금의 폐지
2. 임의거출금의 금액
3. 임의자조금의 자금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식품사업자로 한다.

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식품사업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3.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임의자조금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임의자조금단체가 운용·관리한다.

-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임의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및 계약 등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식품사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총회"는 "임의자조금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임의자조금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식품사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식품의 식품사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정보 중 해당 식품 식품사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출하액 등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식품의 식품사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식품사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식품사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식품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과오납김)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식품사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 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자조금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4. 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4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식품을 생산·유통한 자
 - 4의3.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록 3.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보고

가. 개요

- 생산실적보고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업이 1년동안의 생산·처리·실적에 대해 보고하는 업무로 매년 1월 2일에서 1월 31일까지 1개월간 온라인사이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실시
 - 2015년부터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생산실적보고가 전면 온라인 보고로 전환되었으며, 품목별로 생산실적을 온라인으로 입력/제출해야 함.

부록 그림-3 생산실적보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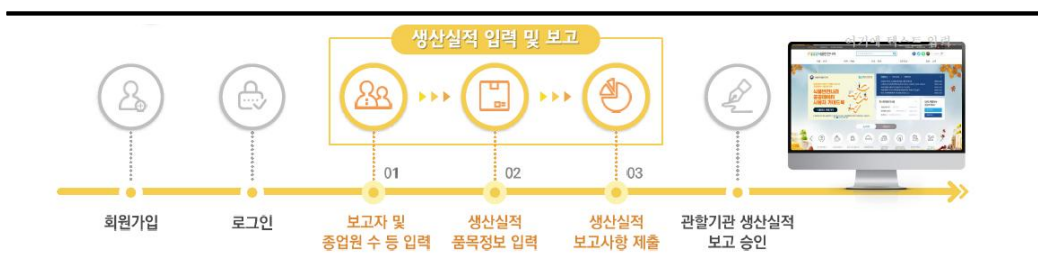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나. 생산실적보고 체계

- 생산실적보고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업종별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생산실적 보고를 진행할 수 있음(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음).
- 생산실적 입력 및 보고절차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후 1) 보고자 및 종업원수 등 입력 → 2) 생산실적 품목정보 입력 → 3) 생산실적 보고사항 제출의 순서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후 관할기관의 생산실적 보고 및 승인으로 완료됨.

부록 그림-4 생산실적 보고 전체 체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다. 생산실적 세부입력방법 및 보고양식

부록 그림-5 생산실적 입력 및 보고 방법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㉞) 생산실적 보고 작성 접속

- 생산실적보고 작성에 접속하여 해당연도의 실적을 작성

부록 그림-6 생산실적 보고 작성 접속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reporting production performance. A yellow callout box labeled '01' highlights a button that says '+ 2021년 생산실적보고 작성' (Write 2021 Production Performance Report). The callout box contains the following instructions:

- “2021년 생산실적보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 등록 진행
- 해당 연도 생산실적보고 작성을 임시저장 했을 시
- 아래 ②생산실적 보고 내역의 해당 보고 연도를 더블 클릭하여 진행
- 생산실적보고 내역을 제출했을 경우 수정 불가
- 관할기관으로 연락하여 제출 취소 처리 요청

Below the callout box, a table lists reporting records for the years 2019, 2018, and 2017. The 2019 row is highlighted with a yellow box, indicating it is the current reporting year.

연도	업종명	관할기관	중업종수(명)	품목수	제출 여부	관할기관 승인여부	발행번호	사업자번호
2019	식품(식품첨가물등 포함)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타	합계	Y	Y
2018							Y	Y
2017							Y	Y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㉟) 보고자 정보 및 종업원수 입력

- 종업원수 조사의 목적은 실제 해당 산업의 종사자 수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직종,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함.
 -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임금지불시 모두 포함하며, 대표자와 가족경영 시 근무하는 가족구성원의 경우도 포함
 - 단, 간접고용(용역, 파견, 외주) 등은 제외,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년 평균인원을 보고함.

부록 그림-7 보고자 정보 및 종업원수 입력

- 01 입력되어 있는 “영업장주소”를 참고하여 “지역구분” 작성
- 02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13자리) 입력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번호(10자리) 입력
- 03 종업원 수 입력 (숫자만 입력)
 - ▶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꼭 재확인 요청
 - ▶ 변경사항 미적용 및 오타 사례 발생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ㄷ) 생산실적 등록/삭제

부록 그림-8 생산실적 등록/삭제

순번	제품보고번호	제품명	제품보고대상 품목유형(참고용)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코드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명	생산 중단	생산종단일
1	201712345678	고이	기타Yet	C0304060200000	기타Yet	N	
2	201712345678	깨감정	과자	C0301010000003	과자(한과류)	N	
3	201712345678	물Yet	물Yet	C0304060100000	물Yet	N	
4	201712345678	원쌀강정	과자	C0301010100000	원쌀강정	N	

- 01 업체의 생산실적 보고대상 품목을 하단 품목대장에 불러옴 → 생산실적보고 준비완료
 - ▶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코드와 품목유형명은 품목보고대상 품목유형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류가 더 세분화 됨) 해당란이 빈 곳 일 수 있습니다. (예 : 포장육 → 포장육 (소), 포장육 (닭))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 업체의 생산실적 보고대상 품목을 품목대장으로 불러와 생산실적 세부내용 작성

- 품목보고번호 및 제품명, 실적보고용 품목유형코드와 품목유형명 등을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함.

(ㄹ) 생산실적 일괄수정

○ 품목보고번호 및 제품명, 실적보고용 품목유형코드와 품목유형명 등이 자동입력된 엑셀파일을 내려받아 생산량, 생산액, 판매수량 등의 생산실적을 입력함.

부록 그림-9 생산실적 일괄수정

제품명 빠른 찾기

+ 품목추가 - 품목삭제

1 전체품목 불러오기

2 엑셀다운로드

순번	품목보고번호	제품명	품목보고대상 품목유형(참고용)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코드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명	생산	생산공단명	생산 단위	연간생산능력 (kg, #)	생산 (kg)
1	201712345678	고이	기타맛	C0304000200000	기타맛	N		KG	0	
2	201712345678	계강한	과자	C0301010000003	과자(한과류)	N		KG	500	
3	201712345678	종이	종이	C0304060100000	종이	N		KG	25000	2
4	201712345678	원발강경	과자	C0301010000003	과자(한과류)	N		KG	500	
5	201712345678	원발사각한국	과자	C0301010000003	과자(한과류)	N		KG	1000	

3 admin.foodsafetykorea.go.kr의 생산실적보고품목목록.xls(10.5KB)를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열기(O) 저장(S) 취소(C) x

해당 항목이 엑셀 "행(가로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음

품목보고번호	제품명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코드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명
201712345678	고이	C0304000200000	기타맛
201712345678	계강한	C0301010000003	과자(한과류)
201712345678	종이	C0304060100000	종이
201712345678	원발강경	C0301010000003	과자(한과류)

품목유형코드 및 품목유형명은 엑셀다운 전에 필히 입력

01 ①부분이 비어 있을 경우, (기준) 품목 불러오기 내용을 참고

02,03 ②,③부분의 값은 수정 가능 (생산공단 여부 (Y/N), 생산량 등) → 변경된 내용을 수정한 후, 엑셀 파일 저장

○ 식약처 생산실적 입력 엑셀파일을 정리한 양식은 아래와 같음.

부록 표-1 식약처 생산실적 양식

자동 입력	품목보고번호	제품명	품목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코드	생산실적보고용 품목유형명
수기 입력	생산중단	생산중단일	생산단위 (kg)	연간생산능력 (kg/L)	생산량 (kg/L)
	생산액(제조원가) (천 원)	국내판매수량 (kg/L)	국내판매금액 (천 원)	국외판매수량 (kg/L)	국외판매금액 (천 원)
	HACCP적용여부	제품선택	생산방식	유통(판매)업체명	품목전산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부록 4. 비영리 사단법인 표준정관(예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재단” 명칭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로 ○○(○○○동)에 둔다.

* 법인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舊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_____
_____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_____
2. _____
3.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 가입승인 절차를 별도로 두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지 말 것.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 회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 ○인 이상 ○○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인 이하

*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 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임의)를 정한다.

** 이사의 수에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명시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상임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이외에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이 특별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3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시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사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법원이 정한 일부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피한정후견인'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할지 여부는 해당 법인에서 판단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 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관규정은 필요없음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한다.

**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감사의 직무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4항과 같이 규정하도록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0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가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지 말고 부결할 것을 권고

제23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조에 따라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도록 규정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지 말고 부결처리 할 것을 권고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00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

제30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1조(이사회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기본재산목록과 평가액을 반드시 별지 형태로 첨부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4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외의 수입금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 추가

** 법인의 수익금은 사원의 회비 또는 그 외의 재원으로 정하도록 한다.

*** 법인의 수익금 중 출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출연금을 사용)

제35조(회계의 원칙)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③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법인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법인의 설립자
- 2.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9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남은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남은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 남은재산은 정관에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고, 정관에 없는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사 목적을 위해 처분 가능(「민법」 제80조)

제42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제43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록 5. 00식품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에 의해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② 관리위원 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관리위원 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자조금 거출액, 해당 식품사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인 (사)한국○○○○○의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기 및 임무)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제7조의 자격요건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으로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퇴, 사망 및 제7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퇴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의원 임기 만료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

우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2. 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 계획 수립·변경, 결산 및 정산사항 결재
3. 자조금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 관리·집행 등에 대한 감독
4.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제5조(부위원장의 임기 및 임무)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임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궐위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자
 6.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납한 자
 7. 대의원회의 감사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단, 제1호에 의한 위원의 자격상실의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원장의 자격상실의 시기는 회장(의장)이 결정한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을 생산·유통하지 않을 때
 2. 대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3. 관리위원회의 목적 및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자격상실에 대한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관리위원회에 불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자격상실에 대한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았을 때
 5. 사퇴서를 제출했을 때
 6.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직을 상실했거나 해당 기관, 단체 등에서 재지명하였을 때
- ③ 자격상실 대상이 되는 위원은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기 변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8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의결사항)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의결한다.

1. 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거출금의 수납
3. 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에 대한 대의원회 보고
4. 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8. 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9.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1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사항
12. 그 밖의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소집)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위원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참여) 회장(의장)·감사·사무국장은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① 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과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이나 품목별 해당 식품사업자 수, 자조금 거출액 등에 따라 관리위원 수를 배분하여 선출된 관리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위원이 해당 지역 또는 품목별 소위원회의 당연직 소위원장이 될 수 있다.

제13조(관계인의 의견청취) 관리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① 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 2명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③ 의사록은 차기회의에서 낭독·접수시켜야 한다.

제15조(포상) ① 국내 ○○○산업 및 자조금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회장(의장)이나 위원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
2. 관리위원회
3. 필요시 회장(의장)이 정하는 날

③ 포상자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자가 아니더라도 필요시 국내 ○○○산업 및 자조금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①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의장)이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실비변상) 회장(의장)은 위원장, 위원, 감사 등 관계인에게 관리위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6. 한국장류협동조합 2021년도 중점운영방향

1. 공동 구매·판매사업 활성화

- TRQ, FTA 등 수입대두 공급 및 비축물자 공급 확대
 1. TRQ 및 수입권대두 안정 공급 위한 공급물량 확보
 2. 수입권공매 및 정부 비축물자 확보 공급 등 수입관리제도 활용 통한 공급 확대
 3. 수입물자 국제 무역 및 국내 방역체계, 수입통관 모니터링으로 안정 공급 실시
 4. 수입권대두 수급 불균형 대비 수입매주 공급 및 대응관리 시스템 구축
 5. 사후관리지침 통한 점검으로 불법사례 점검 및 부정유출 원천 차단
 6. Non-GMO, PLS(잔류농약허용기준) 등 품질 유지를 위한 수입 공급 체계 구축
 7. 장류용 국산대두 확대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직배 장기공급 추진
- 장류제조용 원.부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1. 장류제조용 원.부재료 안정공급 확대를 통한 조합원사 생산성 향상 지원
 2. 국제 원료 시세 및 가격결정 요인 모니터링으로 적정 공급가 산출 적용
 3. 공동구매사업 확대 위한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으로 기반사업 안정
 4. 조합원사 생산 및 경영회복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공동판매사업 활성화
 1. 중소기업 판매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2. 직접생산확인기준 확립 및 참여기업 여건 확보
 3. 공공구매제도 정보 제공 및 관련 인프라 구축
 4. 공공구매 납품 개선 및 구매기관으로의 안정적 납품 추진

5. (군)납품조달 주관기관(방위사업청 -> 조달청) 이관에 따른 대응 체계 확립
6.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재신청 및 유지, 존속 사업 추진

2. 정부지원사업 정책안내 및 대 정부 건의

- 정부 정책 및 R&D 지원사업 추진
 1. 2021년 정부 중점정책 등 정부 지원사업 정보공유 및 참여유도
 2. 조합원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참여
 3. 단체표준 제정 및 컨설팅지원사업 참여
 4. 정부 지원사업보고서 정보공유, 실용화사업 유도
 5. 정부정책지원자금 정보공유 및 조합원 자금 유동성 확보
 6. 장류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정책 실태조사 참여
- 코로나19 정부 정책 지원사업 등 정보사업추진
 1. 2021년 코로나 정부 지원정책 정보공유
 2. 온라인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정부지원사업 연계) 및 조합원 활용
 3. 코로나 피해 관련 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정보공유
 4. 코로나 대처 지침사항 정보공유
- 산. 학. 언론 협력사업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 대응
 2. 장류 바로알리기 사업추진
 3. 장류 홍보를 통한 장류인식제고사업 추진
 4. 포럼, 컬럼기고, 기획기사 등 추진

- 장류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등 대정부 건의
 1. 장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제도 등 대 정부 건의
 2. 장류 관련법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
 3. 식품안전,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정부연계 협의체 참석 및 건의
 4. 장류 비방광고 등에 대한 대응 및 건의
 5.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정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6. 대 정부 건의를 위한 단체간(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등) 네트워크 구축 및 대응
 7. 장류 소비자 인식 개선 정부홍보사업 정책유도

3. 장류산업발전 지원사업 강화

- 장류산업발전진흥법 제정사업 추진
 1. 정부지원사업 연계추진
 2. 정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3. 산업진흥법 제정 협의체 운영 및 제정사업 추진
 4. 산업진흥법 제정(안) 국회 발의
 5. "장"의 날 제정(산업진흥법에 명기)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소스센터 협력사업 추진
 1. 소스센터와의 업무협약 근거한 상호 협력
 2. 기업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화 추진
 3. 소스센터와 조합원 간 연결고리 역할
 4. 조합원의 소스센터 시설, 장비 활용 알선 및 운영 유도
 5. 조합, 산학연 등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참여

6. 혁신 성장 협의체 참여 및 세미나 등 행사 검토 추진

4. 장류제품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

- 장류 안전성확보 및 산학연 협력사업
 1. 장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 정보 공유
 2. HACCP 관련 컨설팅 및 공장견학 알선
 3. 장류 관련 세미나 정보 공유
 4. 각종 온라인 매체 정보공개방 정보제공
 5. 식품 안전 등 이슈화에 의한 TF팀 운영
 6. 식품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관련법 등 정보공유, 지도
 7. 장류 관련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산, 학, 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8. 식품안전 등 정부연계 협의체 참여 및 업계 관련사항 검토, 개선 추진
 9. 이물 등 제품 클레임 대처를 위한 업계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 간장 3-MCPD 기준 안정화사업
 1. 관련법 안내 및 관리철저 유도
 2. 산업체 제품(산분해간장원액) 모니터링 점검
 3. 불합격 제품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및 안정화
- 지도사업
 1. 식품안전, 품질향상, 생산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지도
 2. 조합원업체 검사원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3. 교육, 지도 사업으로 인한 지식함양 및 현장 적용
 4. 식품음료신문 단체 구독 지원

○ 장류 글로벌화 사업

1. 글로벌 제품 정보수집 및 공유
2. 해외 수출정보 안내 및 활용유도
3. 정부 해외사업 정보공유 및 참여
4. 해외 관련단체(일본 장유협회 등) 상호 교류협력
5.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회원업체 실용화(상용화) 유도
6. 장류 베이스로 한 소스제품 다양화 유도
7. 소스 등 신제품개발 다양화로 인한 제품 글로벌화 유도

5. 장류 홍보사업

○ "장"의 날 제정 및 행사추진

1. "장"의 날 협의체 운영 및 결과 도출
2. "장"의 날 제정 일자 확정
3. 행사 추진 관련 대행사 선정 및 추진
4.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5. 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문화부, 서울시 등), 시민단체 등 업무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6. 장류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정부 포상 추진(매년)

○ 장류 인식제고 및 우수성 홍보사업

1. "알기 쉬운 장" 지식정보 SNS 운영
2. 조합 전용 유튜브 채널 운영 및 홍보
3. 식품관련 전문지, 조합홈페이지를 이용한 장류 우수성 홍보

4. 국내·외 식품박람회 장류 홍보관 및 판촉행사 추진(정부지원사업 연계)
5. 장류 해외 공동마케팅사업을 위한 수출협의회 운영추진
6. 산·학·언론 등을 통한 홍보사업 추진

6. 조합운영의 내실화

○ 조합 정보화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1. 온.오프라인 업무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로 업무 효율 및 정보 활용 증대
2.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언택트 업무 역량 강화
3. 정부시책, 지원사업, 법령 및 기술 정보 등의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4. 온.오프라인 및 SNS 등을 활용한 장류 관련 매체, 미디어, 정보를 수집, 제공
5. 분야별 통계자료 및 특허정보 제공을 통한 회원사 경영 지원
6. 조합과 조합원간 양방향 업무 전산화를 통한 각종 데이터 발급 지원

○ 조합 정관, 규약, 규정 관리

1. 급변하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혁신과 역량을 집중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조합 설립목적에 부응
2. 실무를 함에 있어 지침이 될 수 있는 필수 규정 등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업무 편의성.효율성 향상 및 역량강화에 기여
3.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제고, 업무수행능력 향상, 조합 사업 참여도 증대
4.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침 제시

○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시스템 운영 안정화

1. 검사기관 지침(공정, 신속, 정확)에 준한 운영
2. 국제검사기관에 준하는 검사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3. 검사기기의 정기적 검증 및 수리·교체
4. 정부 식품검사정보통합시스템 운영 및 정부, 조합간 네트워크화
5. 국방부 시스템, 부적합 긴급 통보 시스템(식약처) 등 운영
6. 조합원을 위한 검사대행 서비스 확대 및 강화
7. 검사료 인하 운영에 따른 조합원업체 경영 안정화 기여

○ 임직원 능력함양을 위한 교육

1. 조합 임직원의 자질향상 및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함양
2. 전문지식, 직무능력 교육을 통한 조합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 도모
3. 조합 임직원의 글로벌 마인드 형성 및 국제적 역량 강화
4. 중앙회 연수, 직원 개발능력 교육 참여

7. 중장기사업 수립 추진

○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1.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2.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 시장관리 감독 업무 추진
3. 장류 수출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검토
 - 장류 수출협의회 지원확대 및 개선사항 대정부 제안
4. 장류 내수시장 판매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지속 제안 및 검토
5. 조합 중심의 대 정부 대행사업 검토
 - 수요조사, 인력육성사업, R&D사업 등
6. 공동구·판매사업 등 공동화사업 장기적 플랜 검토

7. 장류 증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지속적 정부 지원사업 제안. 추진
 - 국내외 장류 홍보사업 지속적 지원 제안 및 추진
 - 장류 R&D 지원사업, 경영안정화자금 등 지원 확대 제안
 - 전통, 개량 장류의 투트랩화 한 지속적 지원사업 제안
 - 장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제안
8. 장류 관련법 등 제도개선 및 인식제고를 위한 로드맵 구축검토
9. 코로나 팬데믹 등 장류산업계 피해 대응을 위한 사업 검토
10. 조합 각종 운영위원회를 활용한 증장기적 사업추진 검토

참고 문헌

- 김동환, 송정환. 2019. 자조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신유통 포커스 19-03.
- 김영수, 김성훈. 2018. DEA를 활용한 국내 의무자조금단체 경영효율성 분석. 농업경제연구 59-3.
- 박성재, 박준기, 정원호, 임지은. 2012. 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22.
- 박영인. 2004. 자조금 20년, 흥익재.
- 박종수, 권용대. 2001. 낙농자조금 사업의 성과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28-1.
- 박지원, 송양훈. 2016. 매커니즘 디자인을 활용한 배 의무자조금 거출기준 분석. 농업경제연구 57-3.
- 서동휘. 2021.08.04., “가금업계, 공정위 처분 부당함 주장하는 이유”. 축산신문. (<http://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3220>)
- 세계김치연구소, 2016.03, 김치시장 유통구조 및 성공사례 분석
- 오경신, 2021.07.19., “MZ세대 입맛 잡아라”... 대상·CJ ‘김치전쟁’,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19022012>)
- 우정수. 2020.06.12., “닭고기자조금, 계열업체 없이 운영되나”.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451>)
- 윤병삼, 장인복, 차선우. 2013. 인삼 자조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0-3..
- 이동명, 정경수. 2021. 한우자조금사업의 경제효과 평가. 농업경영·정책연구 48-1.
- 이지현. 2021.08.12., “가금업계, 공정위 담합 조사에 강력 반발...조사 중단 촉구 “국회가 나서야””. 식품저널.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85>)
- 이태호. 2021.09.14., “국회는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 즉각 중단시켜라”, 농업축산신문. (<http://www.nc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9>)
- 이현우. 2019.08.09., “‘존폐위기’ 닭고기 자조금 해법없나”.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91>)
- 이현우, 김경욱. 2021.07.30., “가금업계 “정부와 협의한 수급조절이 왜 잘못...농식품부가 책임져라””.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76>)

- 위계육. 2020.09.04., “벼랑끝 닭고기자조금, 신임 위원장 손에 달렸다”. 농업인신문.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00>)
- 위계육. 2020.02.14., “‘닭고기자조금’ 존폐 여부 투표결과 ‘존속’ 결정에 육계농가 반발”,
농업인신문.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23>)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http://marketingboard.kr> (검색일: 2021.12)
- 정경수, 유은아. 2021. “축산자조금 성과평가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 제주감귤연합회. jejugamgyul.or.kr (검색일: 2021.12)
- 한국마늘연합회. www.garlic.or.kr (검색일: 2021.12)
- 한국배연합회. www.kpear.co.kr (검색일: 2021.12)
-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eklpa.com (검색일: 2021.12)
- 한국사과연합회. www.k-apple.kr (검색일: 2021.12)
- 한국양파연합회. www.konion.or.kr (검색일: 2021.12)
- 한국인삼협회. korean-ginseng.org (검색일: 2021.12)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korganicboard.org (검색일: 2021.12)
- 한국키위연합회. www.fruit.or.kr/kiwi/home (검색일: 2021.12)
- 한국포도협회. www.ko-grape.kr (검색일: 2021.12)
-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www.kfcawin.com (검색일: 2021.12)
- 한응수, 한국 김치산업의 발전과 전망, 식품과학과 산업 12월호
- 황태규, 서강철, 한성일. 2016. 한우자조금 사업에 관한 농가 및 소비자 인식 비교 분석. 농
업경영·정책연구 43-4.
- 홍나경, 이용선, 김태균. 2012. 파프리카 자조금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생산자 선호분석. 농
촌경제 35-4.